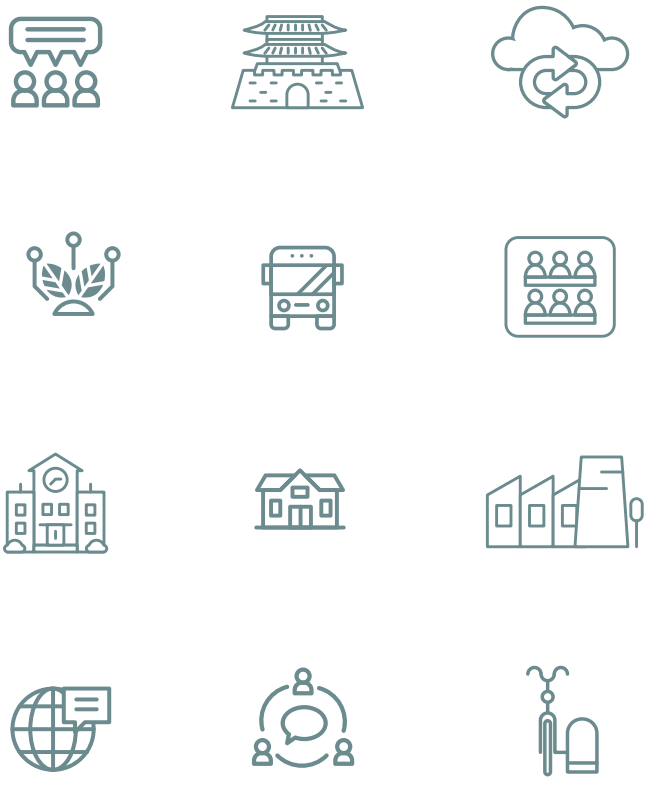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4-제8호

일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발표 (행정안전부) ····· 1

2.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 4

3. 2024년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호남지방통계청) ····· 8

4.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소방청) ····· 23

5. 공간재구조화 실행계획(교육부) ····· 25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서울특별시) ····· 37

2.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전광역시) ····· 42

- [참고] 2023 반려동물 실태조사 및 전북자치도 현황 ····· 45

3.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추진 (서울특별시) ····· 50

4.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 55

5. 전국 최초 버스 요금 QR코드 결제 시스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 59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토연구원) ····· 65

2.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78

3.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82

4.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 (국회입법조사처) ····· 86

5. 배터리 폭발사고 증가문제, 근원적 처방을 위한 리스크 분석 기반 안전규제 체계 조속히 마련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90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감정산 및 교부방식의 문제점 (행정안전위원회) ····· 97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제고 및 관련인력 관리강화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 105

3.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 111

4. 지역 이스포츠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13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표 (행정안전부)

◇ 행안부,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필요한 사항 담은 기준 하달 (7.말)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신규사업 자체진단 가이드라인 개정, 공무원 기준경비 및 세입·세출 예산과목 개정
◇ 이외, 예산서 첨부서류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금 설치 원칙 명시 및 정비 권고 등 포함

1 관계규정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 중점사항 (2025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과 제	과제별 목표
건전·효율적 재정운용	① 건전재정 기조 확립 ② 세입기반 확충 노력 ③ 효율적 재정 운용 ④ 합리적 재정혁신
민생안정·지역경제 활력 제고	① 민생 체감경기 안정 ② 역동적 지역경제 기반 조성 ③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수행
지방시대 준비 / 성장동력 확보	①인구변화 전방위적 대응 ②기업이전 지원, 전략산업 육성 ③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
약자복지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①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②지역 재난관리 역량 제고 ③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3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개정

① (보조사업 성과평가) "미흡" 사업 조치 강화 (매년) ※ [별첨] 참조

➲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

②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매우 미흡" 사업 조치 강화 (3년단위)

➲ 두 경우 모두 사업 폐지를 원칙으로 하나,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유지 가능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②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세분화

① 사회복지 분야 내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 세분화

➲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 '보육', '가족·여성' 세분화

➲ 노인·청소년 부문 → '노인', '청소년' 세분화

② 사회복지 분야 세분화에 따라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변동

➲ (현행) 13개 분야 52개 부문 → (개정) 13개 분야 54개 부문

③ 예비비 과다편성 방지

① (현행 법령)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기준 명시)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명확화

② (현행 법령) (예비비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 이내 편성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기준 명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과다 편성하지 말 것을 권고

④ 예산안 첨부서류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3.9.26.)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 반영

➲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법 제5조제3항 관련)

➲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 관련)

➲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법 제37조제1항 관련)

➲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⑤ 기타 변경사항

① 특별회계 정비 권고 : 세입재원과 세출사업간 연계성이 적거나, 연례적으로 이·불용이 과다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통·폐합

② (기금)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적인 기금 통·폐합

별 첨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요약(최근 3년)

※ 출처 : 회계연도별 결산기준 재정공시

□ 보조사업 성과평가 (연단위)

회계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비율) (단위: 건)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23	838	102 (12%)	175 (21%)	463 (55%)	66 (8%)	32 (4%)
2022	673	60 (9%)	101 (15%)	455 (68%)	57 (8%)	-
2021	695	71 (10%)	112 (16%)	448 (64%)	64 (9%)	-

회계연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단위: 건)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23	384	40 (10%)	87 (23%)	211 (55%)	31 (8%)	15 (4%)
2022	328	33 (10%)	52 (16%)	212 (65%)	31 (9%)	-
2021	313	30 (10%)	54 (17%)	202 (65%)	27 (9%)	-

□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3년 단위)

회계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비율) (단위: 건)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23	76	13 (17%)	22 (29%)	33 (43%)	6 (8%)	2 (3%)
2022	157	16 (10%)	24 (15%)	102 (65%)	15 (10%)	-
2021	"미실시" (「지방보조금법」 시행 : 2021.7.13.)					

회계연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단위: 건)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23	25	2 (8%)	5 (20%)	14 (56%)	2 (8%)	2 (8%)
2022	20	-	4 (20%)	15 (75%)	1 (5%)	-
2021	"미실시" (「지방보조금법」 시행 : 2021.7.13.)					

2.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인구를 확산하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함('24.08.01.)**

1 추진배경

○ 농민 관리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후('23.05.) '농막에서의 취침'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발생하였음

* 가설건축물(농막 등) 설치관리 실태감사 결과(감사원, '23.04.) 20개 지자체 농막 3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7,149개가 불법증축(전용)됨

○ '농막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결과,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결정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함[1)]

2 주요내용

○ **(면적한도)** 개인이 **본인 소유한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임시 숙소 등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33㎡이하** *데크·정화조 등 별도

○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제한지역) 숙소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로 붕괴위험 지역,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특정지역에 설치 제한

○ **(사용기간) 최대 12년 이내**

*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 등 감안(최초 3년, 연장 3회 가능)

○ **(세제특례) 비주택으로 부동산관련 세제(양도세, 종부세) 면제**

* 단,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3

○ **(설치절차)** 이용계획, 피해방지계획 제출 → 해당 지자체 사전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부속시설) 데크, 처마, 정화조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기존 농막은 ①계속 농막으로 사용하거나, ②기준 충족시 농촌체험형 쉼터 시설로 전환가능 단, 3년의 유예기간 이후 불법 농막은 처분 예정

1) 농림축산식품부 (설문기간: '23.10~11월, 설문대상: 일반국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안 비교>

구분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	최대 20㎡(6평)	최대 33㎡(10평)
부대시설	불가능	처마, 데크, 정화조 가능
취사·취침	불가능	가능
사용기간	3년마다 무제한 연장가능	초기 3년 이용 후 최대 3번 연장가능 (총 12년 사용 가능)
시설분류	영농 편의시설	**임시 주거시설**
부동산 보유세	부과하지 않음	부과하지 않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기대효과

○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귀농·귀촌인의 농촌 접근성 향상**과 농촌의 생활인구 확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정책과]

○ **기존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지자체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수리하고 불법 농막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가설건축물(농막 등) 설치 및 관리실태(감사원, 2023)'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증축 및 불법전용한 농막이 17,149개(전체 농막의 약 52%)**임에도 불구하고, **단 3%인 559개만 법상 조치**된 걸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움을 반영함

* 완주군은 설치된 농막 수 1,086개 중 불법증축 농막이 578개(53.2%)로 실태조사 결과 확인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기존 숙소 사용 등 불법 사용한 전례가 많았던 농막에 대한 보완책이 시행되고, **5도 2촌의 활성화와 함께 전북자치도의 농촌 활성화와 생활인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 **①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 ~시행예정) **②-1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 **임대, ②-2**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24.下 개정안발의, '25.시행~)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음

○ 본 법안이 시행되면 **도시민들의 농지매매가 활성화**되고 농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꾀할 수 있음.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기존 농막을 쉼터 전환 등 법적 양성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지도·홍보**가 요구됨

○ 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이 생기는 만큼, **쉼터 이용자-농촌 거주민 간 갈등 발생과 농촌난개발이 예상되며 기존의 농촌 빈집 활용 등 농가주택 재활용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참고 **농촌체류형 쉼터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4.0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시설규모 연면적 33㎡이하 (데크·정화조 등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 처마, 데크가 없는 경우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 처마, 데크가 있는 경우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이하) 부합
-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

⇒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 개선

- 연면적 20㎡ 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 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3. 2024년 2분기 전북권 지역경제동향 (호남지방통계청)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

1. 생산동향(광공업)

'24년 2분기 전북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109.1로 전년동분기대비 0.9% 감소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109.1**로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늘었으나, 1차 금속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0.9% 감소**

【 전년동분기대비 광공업생산 주요 증감내역(업종별) 】

(증가) 화학제품(9.9%), 식료품(4.7%), 섬유제품(59.4%) 등
(감소) 1차 금속(-20.6%), 기타 기계·장비(-11.5%), 음료(-15.3%) 등

【 광공업생산지수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 광공업생산지수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 업종별 광공업생산 증감률 】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p	기여도
광공업생산지수	7.5	0.5	-3.3	-1.6	-6.6	-10.4	-3.2	-0.9	-
광업	-5.4	-11.2	6.2	-0.9	-3.6	28.4	-11.5	-7.2	-0.04
제조업	7.4	-0.3	-3.9	-2.6	-7.7	-10.8	-3.8	-2.4	-2.18
화학제품	-1.7	-4.5	-3.9	-12.4	-6.9	-4.5	-4.1	9.9	1.24
식료품	7.0	-4.3	-7.6	-7.9	-8.3	-3.1	4.0	4.7	0.70
섬유제품	-5.9	-44.3	-35.6	-32.2	-4.4	27.3	42.5	59.4	0.48
음료	15.8	4.1	4.7	15.0	3.2	1.9	-18.3	-15.3	-0.77
기타 기계·장비	11.8	2.4	-10.2	-6.9	-14.2	-26.3	-14.7	-11.5	-0.83
1차 금속	-8.0	-8.0	-6.3	0.9	-18.2	-25.7	-22.5	-20.6	-1.70
전기·가스업	9.5	10.2	1.0	8.1	3.1	-7.5	2.0	13.5	1.31

주. 전년동분기대비 제조업 증감률(기여도순) 상·하위 3개 업종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 생산동향(서비스업)

'24년 2분기 전북지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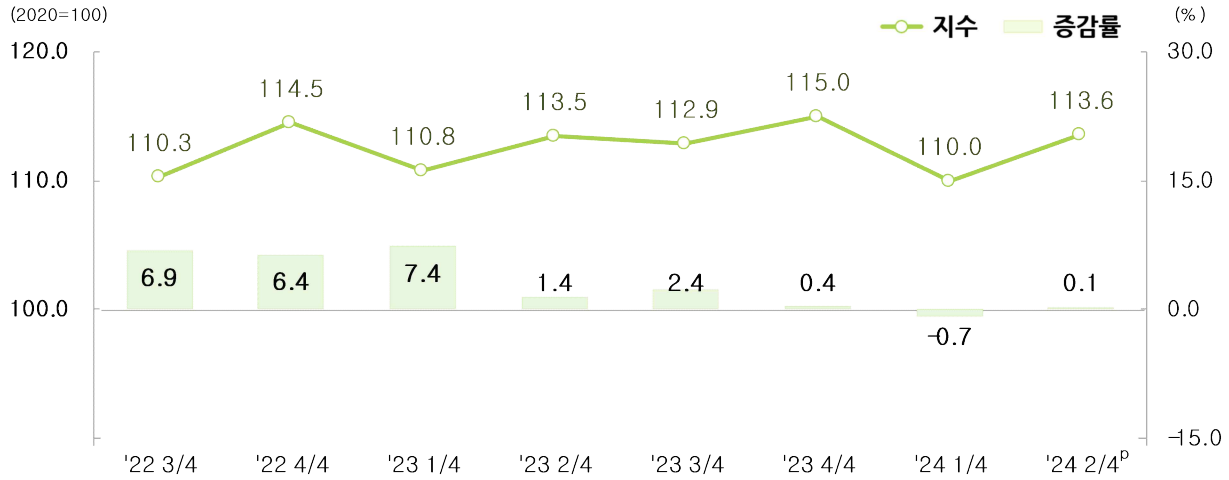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3.6**으로 금융·보험 등에서 줄었으나, 부동산 등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0.1% 증가**

【 전년동분기대비 서비스업생산 주요 증감내역(업종별) 】

(증가) 부동산업(11.0%), 예술·스포츠·여가(13.2%), 운수·창고(7.0%) 등

(감소) 금융·보험(-5.1%), 도소매(-2.8%), 전문·과학·기술(-1.8%) 등

【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 업종별 서비스업생산 증감률(불변) 】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p	기여도
서비스업생산지수	**6.9**	**6.4**	**7.4**	**1.4**	**2.4**	**0.4**	**-0.7**	**0.1**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2.3	-7.1	-0.2	-1.0	-0.8	1.1	2.8	**6.0**	0.12
도소매	1.7	1.3	2.7	-1.4	-3.3	-2.0	-6.1	**-2.8**	-0.46
운수·창고	5.6	3.0	2.5	6.3	6.6	7.9	5.7	**7.0**	0.39
숙박·음식점	26.7	18.0	25.2	-3.8	-8.0	-10.5	-2.2	**-2.2**	-0.11
정보통신	0.8	-3.5	-6.6	-4.9	-2.4	-0.9	0.5	**1.3**	0.03
금융·보험	9.0	11.4	11.0	5.5	0.8	-4.0	-3.1	**-5.1**	-0.82
부동산	30.1	43.6	34.1	10.0	10.6	1.4	-6.7	**11.0**	0.54
전문·과학·기술	5.4	6.4	6.2	-2.0	-10.6	-8.7	-3.5	**-1.8**	-0.1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1.8	-1.2	9.0	6.5	9.4	6.8	1.5	**-0.7**	-0.03
교육	3.0	1.1	3.2	-2.1	-1.2	4.8	3.7	**1.0**	0.15
보건·사회복지	5.1	4.2	4.6	0.6	3.1	1.9	2.7	**0.4**	0.07
예술·스포츠·여가	28.1	27.1	5.6	-3.4	67.7	-3.6	3.5	**13.2**	0.39
협회·수리·개인	7.9	0.9	16.6	16.4	21.3	23.3	-2.2	**-2.6**	-0.1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3. 소비동향

'24년 2분기 전북지역 소매판매액지수는 99.8로 전년동분기대비 3.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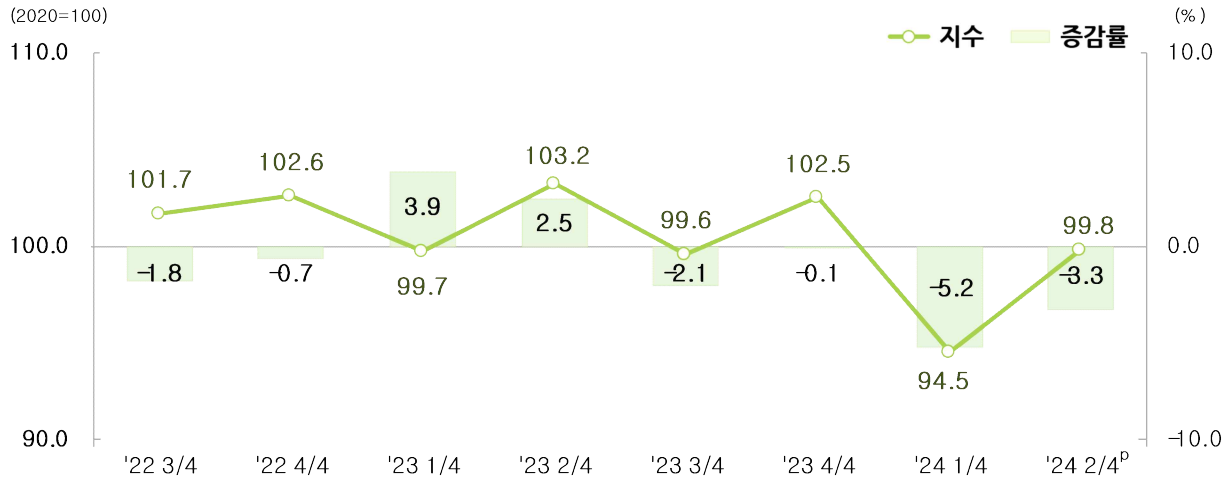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소매판매액지수**는 **99.8**로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등 모든 판매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3.3% 감소**

【 전년동분기대비 소매판매 주요 증감내역(업태별) 】

(증가) 없음

(감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7%), 전문소매점(-2.7%) 등

【 소매판매액지수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 업태별 소매판매 증감률(불변) 】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p	기여도
소매판매액지수	**-1.8**	**-0.7**	**3.9**	**2.5**	**-2.1**	**-0.1**	**-5.2**	**-3.3**	-
백화점	*	*	*	*	*	*	*	*	*
대형마트	-4.4	-4.9	-2.3	-0.5	1.7	9.3	0.4	**-2.7**	-0.13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	-3.9	-3.0	3.1	-0.1	2.6	-3.5	-2.2	**-2.4**	-0.54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0.8	6.6	21.6	12.8	-0.8	3.1	-7.6	**-4.7**	-1.36
전문소매점	-3.3	-5.3	-6.2	-2.6	-6.8	0.3	-6.5	**-2.7**	-1.15

주. 사업체 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으로 마스킹 처리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4.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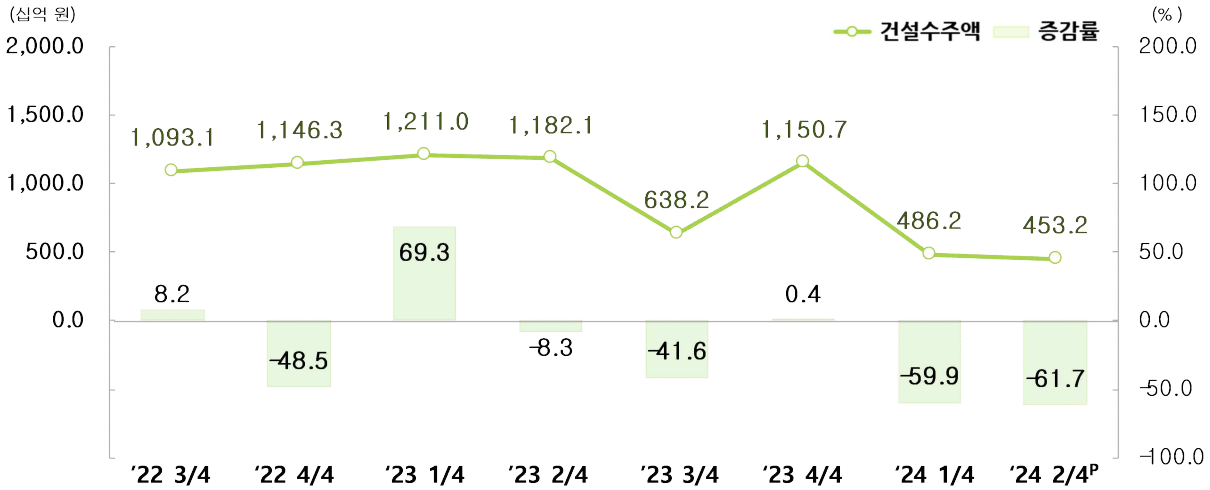
'24년 2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1.7% 감소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 원**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수주가 모두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61.7% 감소**

【 전년동분기대비 건설수주 주요 증감내역(공종별·발주자별) 】

공종별 **(증가)** 없음 **(감소)** 토목(-84.8%) 등
발주자별 **(증가)** 국내외국기관(0.2%) **(감소)** 공공(-72.3%) 등

【 건설수주액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 공종별·발주자별 건설수주 증감률(경상) 】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P	기여도
건설수주액		**8.2**	**-48.5**	**69.3**	**-8.3**	**-41.6**	**0.4**	**-59.9**	**-61.7**	-
공종별	건축	-24.6	-47.6	67.9	-38.5	-43.6	0.2	-72.9	**-36.9**	-17.81
	토목	191.8	-49.7	76.4	69.0	-38.7	0.6	2.4	**-84.8**	-43.86
발주자별	공공	100.9	-50.4	133.0	44.9	-55.3	-27.6	-42.4	**-72.3**	-39.4
	민간	-17.2	-45.6	54.0	-33.0	-32.1	29.6	-65.2	**-49.0**	-22.3
	국내외국기관	217.4	-94.7	194.7	-15.6	-94.3	-100.0	-100.0	**0.2**	0.0
	민자	1,202.7	-100.0	-100.0	-100.0	-100.0	-	-	**-**	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5.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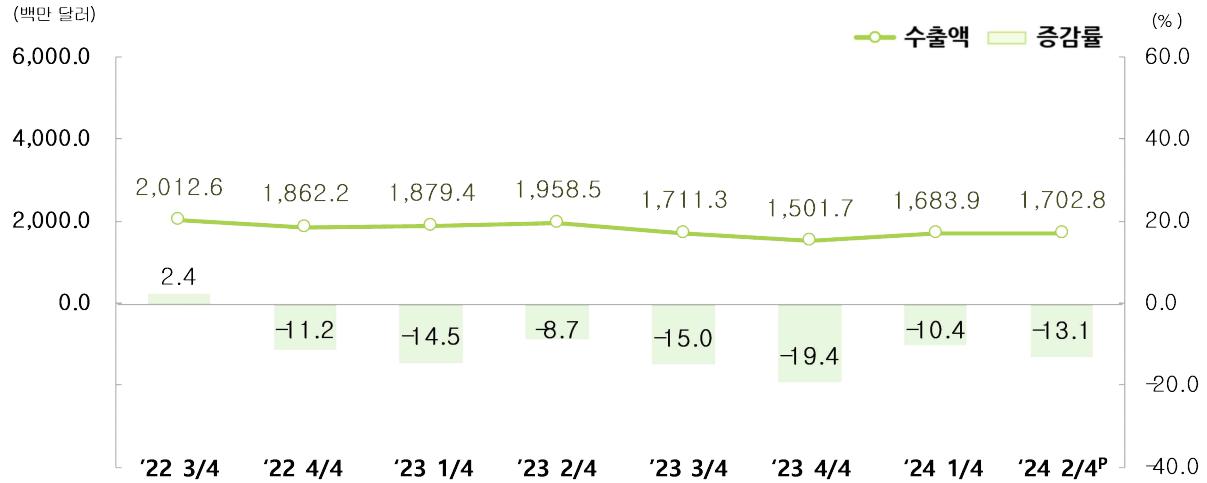
'24년 2분기 전북지역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동분기대비 13.1% 감소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기타 음식료 소비재 등의 수출이 늘었으나, 기타 일반기계류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3.1% 감소**

【 전년동분기대비 수출 주요 증감내역(품목별) 】

(증가) 기타 음식료 소비재(39.5%), 금속광(554.5%),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12.1%) 등
(감소) 기타 일반기계류(-35.4%), 비철금속(-31.7%), 화물차(-21.3%) 등

【 수출액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 주요품목별 수출 증감률(경상) 】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P	기여도
수출액	**2.4**	**-11.2**	**-14.5**	**-8.7**	**-15.0**	**-19.4**	**-10.4**	**-13.1**	-
기타 음식료 소비재	16.9	3.2	-11.3	-20.8	-0.1	5.6	21.0	**39.5**	1.57
금속광	42.8	97.6	101.4	-55.4	-31.6	-24.3	-48.2	**554.5**	0.95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	-24.7	-30.8	-35.5	-31.7	-20.4	-2.2	0.7	**12.1**	0.72
차량 부품	9.7	8.1	28.7	10.7	0.5	-17.6	-0.7	**19.0**	0.69
화학섬유	-89.4	-100.0	-100.0	-99.4	-98.0	32,049.3	45,114.4	**4,266.0**	0.46
기타 화학제품	22.2	-26.5	-19.1	5.8	-6.3	-21.3	-10.8	**-9.9**	-1.12
철강 봉 및 형강	8.2	-26.3	8.9	-51.4	-82.8	-89.9	-96.9	**-97.1**	-1.95
화물차	33.3	-1.1	3.3	3.4	-19.2	-8.0	-5.8	**-21.3**	-2.96
비철금속	-11.7	-23.4	-35.0	-21.2	-12.4	-32.8	-26.6	**-31.7**	-3.55
기타 일반기계류	35.4	31.0	24.4	31.9	4.9	-27.9	-4.1	**-35.4**	-5.46

주.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기여도순) 상·하위 5개 품목으로 작성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서비스

6.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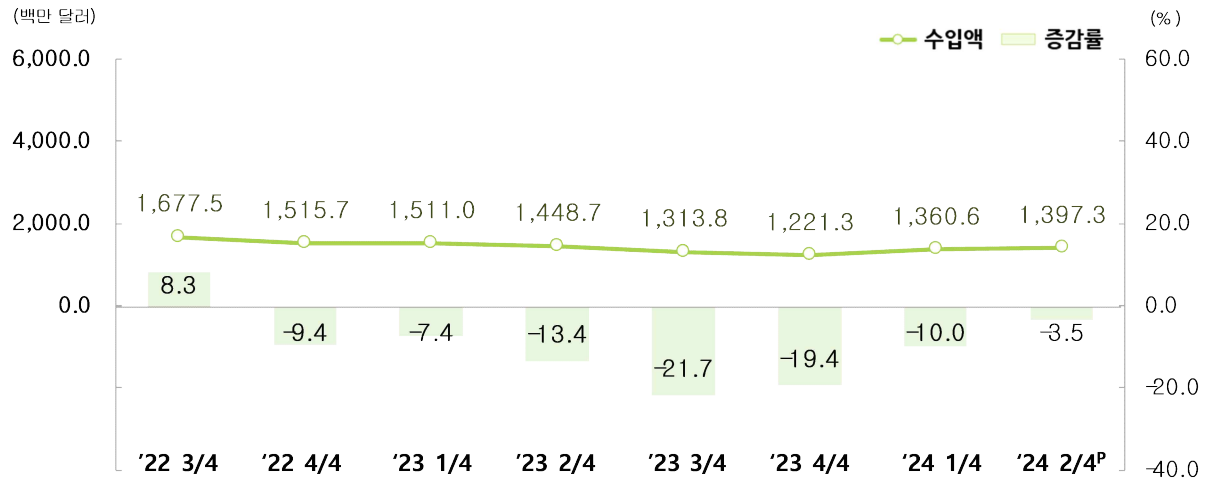
'24년 2분기 전북지역 수입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동분기대비 3.5% 감소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수입액**은 **14.0억 달러**로 항공기 등의 수입이 늘었으나, 사료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3.5% 감소**

【 전년동분기대비 수입 주요 증감내역(품목별) 】

(증가) 항공기(6,356.3%), 원동기(90.8%), 무쇠(61.5%) 등
(감소) 사료(-17.7%), 알루미늄(-31.5%), 어류(-62.3%) 등

【 수입액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 주요품목별 수입 증감률(경상) 】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P	기여도
수입액	**8.3**	**-9.4**	**-7.4**	**-13.4**	**-21.7**	**-19.4**	**-10.0**	**-3.5**	-
항공기	1,686.5	18.9	-24.9	-14.1	-97.0	28.0	9,435.1	**6,356.3**	1.62
원동기	-34.4	7.7	-43.9	-39.4	-16.9	-7.2	56.8	**90.8**	1.47
무쇠	-20.8	-34.7	-10.5	5.4	-6.6	44.0	-5.2	**61.5**	1.06
동	36.9	-9.0	-47.9	-41.8	-48.4	-55.7	-21.8	**112.4**	0.86
기타 전기기기	55.7	38.6	22.7	-6.9	-0.7	2.5	4.7	**27.8**	0.71
기타 화학제품	-11.9	-19.1	13.9	-15.4	-9.8	-9.1	-28.0	**-26.5**	-0.95
기타 자본재	-26.0	65.0	-30.4	18.9	-10.4	-37.0	-26.1	**-23.2**	-1.01
어류	13.1	-19.4	-63.8	94.4	-21.0	13.3	106.0	**-62.3**	-1.52
알루미늄	39.2	3.5	-1.9	-31.1	38.5	-14.9	-18.1	**-31.5**	-1.60
사료	49.1	37.0	1.7	17.7	-19.4	-18.6	-4.3	**-17.7**	-2.83

주.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기여도순) 상·하위 5개 품목으로 작성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서비스

7. 물가동향

'24년 2분기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8% 상승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으로, 지출목적별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 모든 물가가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2.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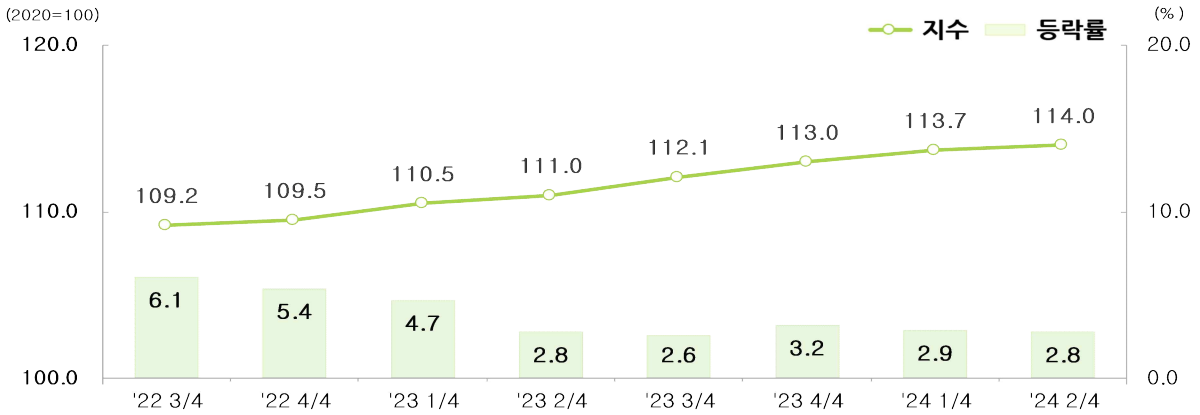
【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 주요 등락내역(지출목적별) 】

(상승)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0%), 음식 및 숙박(3.4%), 교통(3.1%) 등
(하락) 없음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분기대비 **3.2% 상승**

* 구입 빈도와 가격변동에 민감한 쌀, 배추 등 143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지수임

【 소비자물가지수 및 전년동분기대비 등락률 】



【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

(전년동분기대비, %)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소비자물가지수	**6.1**	**5.4**	**4.7**	**2.8**	**2.6**	**3.2**	**2.9**	**2.8**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7.2	6.1	7.2	5.5	5.4	7.5	6.7	**5.0**
주류 및 담배	1.7	1.8	0.6	0.2	0.1	1.1	1.0	**1.0**
의류 및 신발	3.3	4.8	5.3	7.0	7.7	6.7	5.7	**3.5**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8.9	9.6	9.3	6.8	4.7	2.9	1.7	**1.4**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4.7	4.3	5.6	5.1	4.5	4.3	2.5	**1.8**
보건	0.8	1.4	1.6	1.5	1.8	1.7	1.7	**2.2**
교통	10.6	3.9	-1.2	-9.0	-5.6	-0.7	0.9	**3.1**
통신	1.2	1.7	1.2	1.1	1.0	0.3	0.3	**0.3**
오락 및 문화	3.6	4.8	4.4	3.9	2.7	2.2	1.3	**1.5**
교육	1.2	1.0	1.1	0.9	0.6	0.8	1.1	**1.6**
음식 및 숙박	8.5	8.3	7.3	6.2	4.2	3.9	3.4	**3.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6.6	7.2	6.1	5.2	4.0	3.3	3.8	**3.8**
생활물가지수	**7.2**	**6.0**	**5.3**	**2.6**	**2.9**	**3.7**	**3.3**	**3.2**

주.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20년, 가중치의 기준연도는 2022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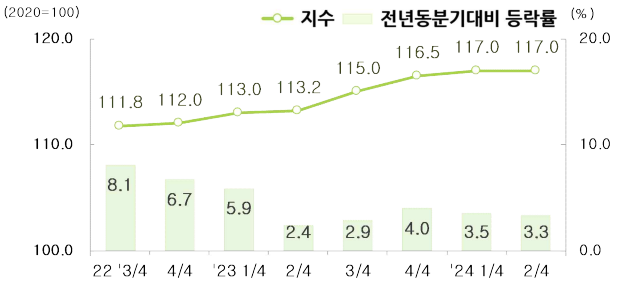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소비자 상품물가지수**는 수산물에서 하락하였으나, 농산물 등이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3.3% 상승**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소비자 서비스물가지수**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에서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2.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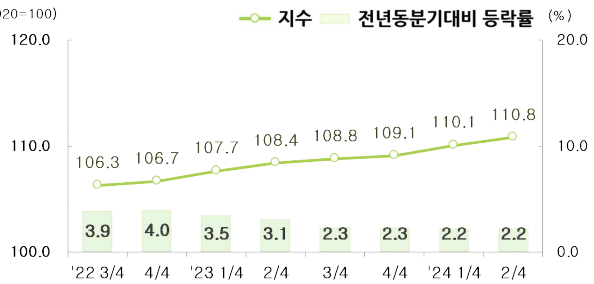
【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 주요 등락내역(품목성질별) 】

상품	**(상승)** 농산물(16.0%), 석유류(2.7%) 등	**(하락)** 수산물(-1.4%)
서비스	**(상승)**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2.6%) 등	**(하락)** 없음

【 상품물가지수 및 등락률 】



【 서비스물가지수 및 등락률 】



【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

(전년동분기대비, %)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소비자물가지수	**6.1**	**5.4**	**4.7**	**2.8**	**2.6**	**3.2**	**2.9**	**2.8**
상품	**8.1**	**6.7**	**5.9**	**2.4**	**2.9**	**4.0**	**3.5**	**3.3**
농축수산물	5.6	2.7	4.0	2.5	3.7	9.2	10.3	**8.1**
농산물	8.4	3.3	3.7	3.9	4.6	14.9	18.3	**16.0**
축산물	2.3	0.4	0.8	-2.6	0.3	2.7	2.6	**0.6**
수산물	3.6	5.8	11.7	9.8	7.9	4.7	0.0	**-1.4**
공업제품	8.2	6.2	4.3	0.4	1.1	2.2	1.8	**2.3**
가공식품	8.2	9.3	9.6	7.2	6.1	4.6	2.2	**1.9**
내구재	3.3	3.4	2.5	2.8	2.5	2.0	2.3	**2.3**
섬유제품	3.7	5.0	5.8	7.2	7.5	6.5	5.7	**3.6**
출판물	2.9	2.8	2.7	2.5	2.4	2.3	1.3	**1.7**
석유류	26.1	9.4	-2.9	-19.6	-14.6	-4.6	-2.3	**2.7**
의약품	0.3	0.5	1.5	2.0	2.2	2.0	2.0	**2.4**
화장품	10.1	11.0	8.6	5.8	2.0	-0.5	-0.6	**0.3**
기타 공업제품	4.5	5.3	5.6	4.5	4.4	3.3	1.8	**1.7**
전기·가스·수도	14.7	21.3	26.9	22.8	19.2	9.6	4.7	**2.4**
서비스	**3.9**	**4.0**	**3.5**	**3.1**	**2.3**	**2.3**	**2.2**	**2.2**
집세	0.7	0.7	0.6	0.3	0.2	0.1	0.0	**0.1**
공공서비스	1.1	1.1	0.7	-0.2	0.1	0.3	0.7	**1.4**
개인서비스	5.7	5.8	5.2	5.0	3.6	3.5	3.2	**2.9**
외식	8.5	8.4	7.4	6.2	4.2	3.9	3.4	**3.4**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3.9	4.1	3.6	4.2	3.2	3.2	3.1	**2.6**

주.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20년, 가중치의 기준연도는 2022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조사

8. 고용동향

8-1.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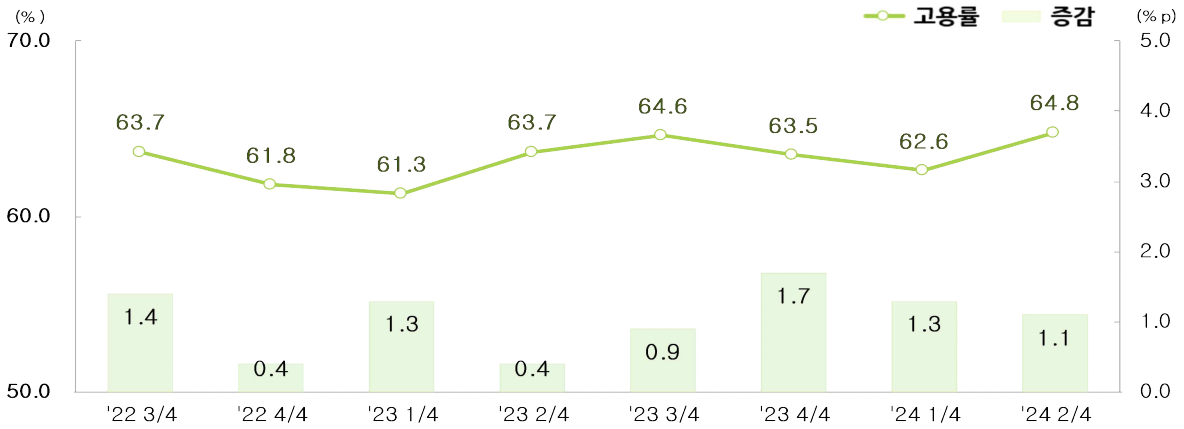
'24년 2분기 전북지역 고용률은 64.8%로 전년동분기대비 1.1%p 상승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고용률**은 **64.8%**로 40~49세에서 하락하였으나, 50~59세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분기대비 **1.1%p 상승**

【 전년동분기대비 고용률 주요 증감내역(연령계층별) 】

(상승) 50～59세(3.2%p), 60세 이상(0.9%p) 등
(하락) 40～49세(-0.5%p)

【 고용률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 】



【 연령계층별 고용률 및 증감 】

(%, 전년동분기대비, %p)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고용률	**63.7**	**61.8**	**61.3**	**63.7**	**64.6**	**63.5**	**62.6**	**64.8**
15 ~ 29세	40.4	38.0	38.4	37.4	40.1	39.4	37.6	**38.1**
30 ~ 39세	77.4	78.0	78.1	79.9	80.1	79.9	79.0	**80.4**
40 ~ 49세	80.3	80.9	79.6	80.4	79.0	79.6	79.0	**79.9**
50 ~ 59세	77.1	77.6	78.4	79.2	80.1	80.9	79.8	**82.4**
60세 이상	56.2	51.6	50.2	56.1	57.1	53.9	53.4	**57.0**
고용률 증감	**1.4**	**0.4**	**1.3**	**0.4**	**0.9**	**1.7**	**1.3**	**1.1**
15 ~ 29세	3.0	-1.1	1.2	-1.4	-0.3	1.4	-0.8	**0.7**
30 ~ 39세	3.6	4.8	7.1	6.4	2.7	1.9	0.9	**0.5**
40 ~ 49세	-0.2	0.1	-2.4	-2.1	-1.3	-1.3	-0.6	**-0.5**
50 ~ 59세	0.8	0.7	2.5	0.9	3.0	3.3	1.4	**3.2**
60세 이상	0.7	0.0	0.7	0.4	0.9	2.3	3.2	**0.9**

주.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수) × 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8-2.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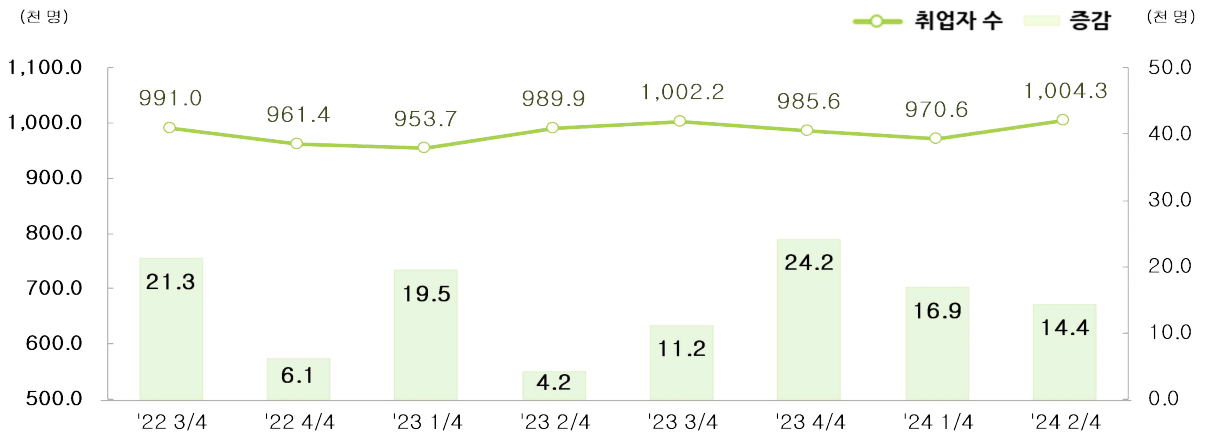
'24년 2분기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1,004.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4천 명 증가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1,004.3천 명**으로 농업·임업 및 어업 등에서 줄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14.4천 명 증가**

【 전년동분기대비 취업자 수 주요 증감내역(산업별) 】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30.4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2.7천 명)
(감소) 농업·임업 및 어업(-12.9천 명), 건설업(-3.0천 명) 등

【 취업자 수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 】



【 산업별 취업자 수 및 증감 】

(천 명,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취업자 수	**991.0**	**961.4**	**953.7**	**989.9**	**1,002.2**	**985.6**	**970.6**	**1,004.3**
농업·임업 및 어업	185.7	170.2	150.8	175.2	174.8	163.3	143.8	**162.3**
광·제조업	117.9	124.2	123.7	127.5	132.0	131.0	128.0	**127.1**
건설업	72.6	68.8	72.6	74.3	72.4	75.8	76.9	**71.3**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80.9	172.9	170.5	161.7	157.8	157.1	152.9	**159.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369.0	358.4	368.8	377.8	387.6	380.9	392.3	**408.2**
전기·운수·통신·금융	65.1	67.0	67.2	73.3	77.7	77.5	76.8	**76.0**
취업자 수 증감	**21.3**	**6.1**	**19.5**	**4.2**	**11.2**	**24.2**	**16.9**	**14.4**
농업·임업 및 어업	13.6	6.6	-0.5	-3.6	-10.9	-6.9	-7.0	**-12.9**
광·제조업	1.3	0.7	2.3	13.2	14.1	6.8	4.3	**-0.4**
건설업	-0.8	-5.6	2.2	-1.8	-0.2	7.0	4.3	**-3.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9	-8.8	-9.8	-19.5	-23.1	-15.8	-17.6	**-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7.1	22.5	26.3	6.7	18.6	22.5	23.5	**30.4**
전기·운수·통신·금융	-13.6	-9.3	-1.1	9.2	12.6	10.5	9.6	**2.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8-3. 실업률

'24년 2분기 전북지역 실업률은 2.5%로 전년동분기대비 0.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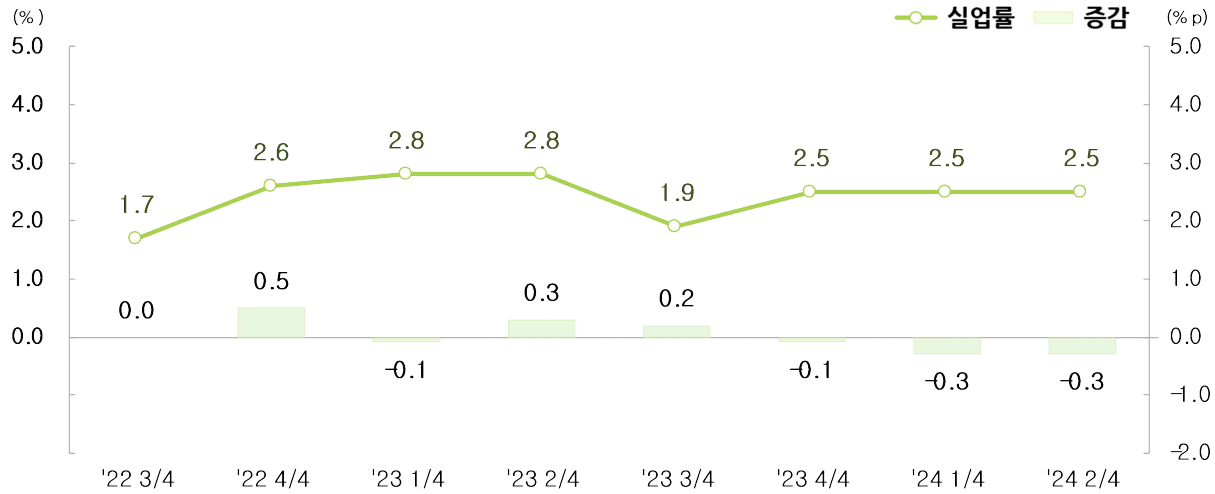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실업률**은 **2.5%**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하여 전년동분기대비 **0.3%p 하락**

【 전년동분기대비 실업률 주요 증감내역(연령계층별) 】

(상승) 없음

(하락) 15~29세(-0.8%p), 30~59세(-0.2%p), 60세 이상(-0.2%p)

【 실업률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 】



【 연령계층별 실업률 및 증감 】

(%, 전년동분기대비, %p)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실업률	**1.7**	**2.6**	**2.8**	**2.8**	**1.9**	**2.5**	**2.5**	**2.5**
15 ~ 29세	6.6	6.7	9.0	12.2	8.3	6.5	7.1	**11.4**
30 ~ 59세	1.3	1.1	1.6	2.0	1.3	1.1	1.7	**1.8**
60세 이상	0.4	4.0	2.7	0.9	0.6	3.5	2.3	**0.7**
실업률 증감	**0.0**	**0.5**	**-0.1**	**0.3**	**0.2**	**-0.1**	**-0.3**	**-0.3**
15 ~ 29세	1.8	4.6	3.3	4.7	1.7	-0.2	-1.9	**-0.8**
30 ~ 59세	-0.2	-0.3	-0.5	-0.4	0.0	0.0	0.1	**-0.2**
60세 이상	-0.4	0.5	-0.9	0.2	0.2	-0.5	-0.4	**-0.2**

주.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수) × 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8-4. 실업자 수

'24년 2분기 전북지역 실업자 수는 26.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7천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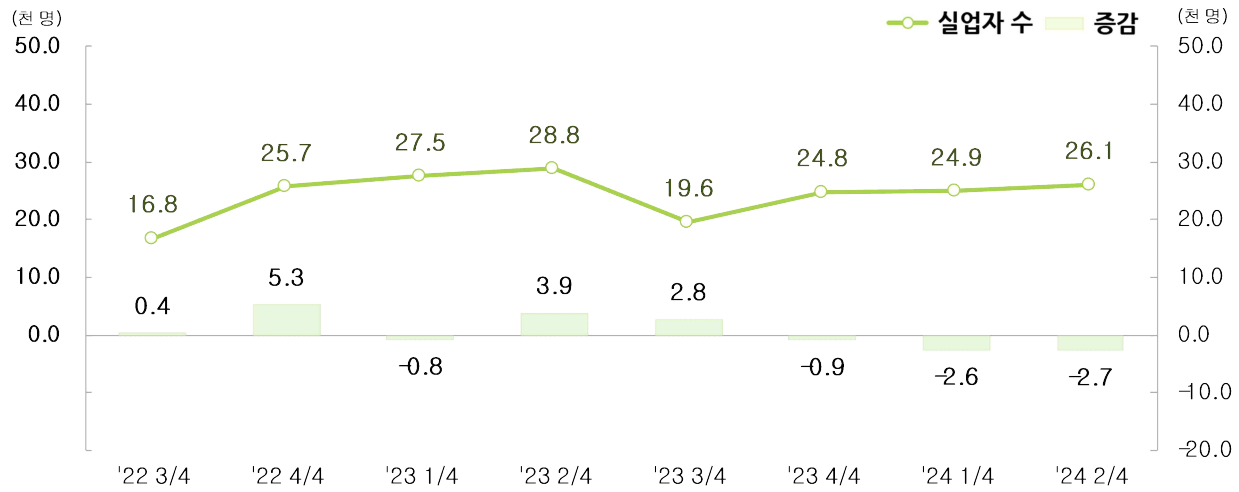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실업자 수**는 **26.1천 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7천 명 감소**

【 전년동분기대비 실업자 수 주요 증감내역(연령계층별) 】

(증가) 없음

(감소) 15~29세(-1.4천 명), 30~59세(-0.9천 명), 60세 이상(-0.3천 명)

【 실업자 수 및 전년동분기대비 증감 】



【 연령계층별 실업자 수 및 증감 】

(천 명,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실업자 수	**16.8**	**25.7**	**27.5**	**28.8**	**19.6**	**24.8**	**24.9**	**26.1**
15 ~ 29세	8.0	7.6	10.6	14.4	10.0	7.4	7.7	**13.0**
30 ~ 59세	7.7	6.1	9.1	11.6	7.4	6.3	10.0	**10.7**
60세 이상	1.1	12.0	7.8	2.7	2.1	11.1	7.2	**2.4**
실업자 수 증감	**0.4**	**5.3**	**-0.8**	**3.9**	**2.8**	**-0.9**	**-2.6**	**-2.7**
15 ~ 29세	2.5	5.2	4.2	5.5	2.0	-0.2	-2.9	**-1.4**
30 ~ 59세	-0.9	-1.9	-2.8	-2.3	-0.3	0.2	0.9	**-0.9**
60세 이상	-1.3	2.1	-2.2	0.6	1.0	-0.9	-0.6	**-0.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9. 국내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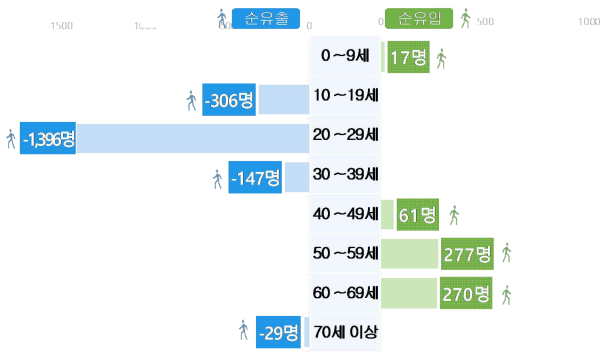
'24년 2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1,253명 순유출

□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50~59세 등의 연령과 완주군 등의 지역에서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으나, 20~29세 등의 연령과 전주시 등의 지역이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1,253명 순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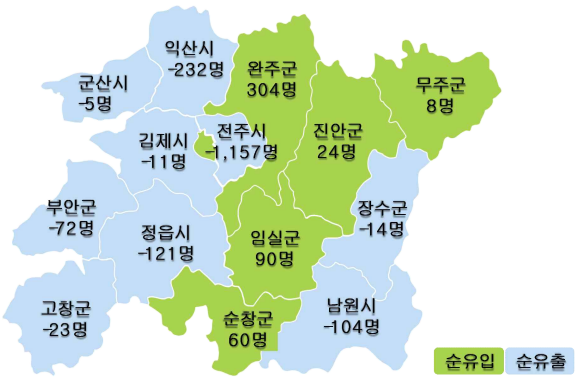
【 순유입 및 순유출 주요내역(연령별·관할시군별) 】

연령별	**(순유입)** 50~59세(277명) 등	**(순유출)** 20~29세(-1,396명) 등
관할시·군별	**(순유입)** 완주군(304명) 등	**(순유출)** 전주시(-1,157명) 등

【 연령별 순이동자 수('24년 2분기) 】



【 관할 시·군별 순이동자 수('24년 2분기) 】



【 연령별 순이동자 수 】

(명)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순이동자 수	**-1,557**	**-375**	**-1,764**	**-881**	**-1,065**	**-747**	**-2,715**	**-1,253**
0 ~ 9세	0	2	33	68	-8	-33	92	**17**
10 ~ 19세	-276	107	-411	-191	-106	114	-530	**-306**
20 ~ 29세	-1,883	-1,408	-2,176	-1,545	-1,385	-1,290	-2,705	**-1,396**
30 ~ 39세	-266	-83	-249	-239	-112	-119	-112	**-147**
40 ~ 49세	212	131	119	211	137	114	95	**61**
50 ~ 59세	322	323	464	464	175	286	262	**277**
60 ~ 69세	220	499	361	306	270	266	231	**270**
70세 이상	114	54	95	45	-36	-85	-48	**-29**

주. 순이동자 수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는 순유입, -는 순유출, 0은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가 동일)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 관할 시·군별 순이동자 수 】

(명)

구분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	2023 4/4	2024 1/4	**2024 2/4**
전북특별자치도	**-1,557**	**-375**	**-1,764**	**-881**	**-1,065**	**-747**	**-2,715**	**-1,253**
전주시	-970	-1,087	-3,228	-1,616	-1,498	-1,208	-1,603	**-1,157**
군산시	-294	-136	-590	-389	-69	-180	-662	**-5**
익산시	-817	-435	-676	-444	-644	-189	-948	**-232**
정읍시	-115	-32	-184	-116	-22	-58	-135	**-121**
남원시	-291	-114	-180	-94	-140	-21	-231	**-104**
김제시	575	504	659	232	-85	-5	66	**-11**
완주군	774	904	2,002	1,511	1,585	843	967	**304**
진안군	-105	-61	176	49	-10	-3	51	**24**
무주군	-38	7	-2	80	33	-19	-8	**8**
장수군	-53	-41	-73	-7	5	-22	-64	**-14**
임실군	-79	89	-17	-43	-68	-59	-27	**90**
순창군	19	132	130	159	-5	104	136	**60**
고창군	-83	-98	38	-39	-31	180	-38	**-23**
부안군	-80	-7	181	-164	-116	-110	-219	**-72**

주. 순이동자 수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는 순유입, -는 순유출, 0은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가 동일)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참고 2024년 2/4분기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2024년 2/4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광공업생산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전국	호남	광주	전남	전북
4.8	3.4	5.3	4.8	-0.9

서비스업생산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전국	광주	전남	전북
1.6	1.5	-1.8	0.1

소매판매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전국	광주	전남	전북
-2.9	-2.7	-6.3	-3.3

건설수주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전국	호남	광주	전남	전북
15.5	-35.2	-77.1	46.9	-61.7

수출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전국	호남	광주	전남	전북
9.9	2.1	-6.7	8.6	-13.1

수입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전국	호남	광주	전남	전북
-1.4	5.3	-7.4	8.8	-3.5

소비자물가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전국	광주	전남	전북
2.7	3.1	3.0	2.8

생활물가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전국	광주	전남	전북
3.2	3.3	3.6	3.2

고용률 (단위: %p, 전년동분기 차)



전국	호남	광주	전남	전북
0.1	0.2	1.2	-1.5	1.1

인구순이동 (단위: 명, 해당분기내 순이동)



호남	광주	전남	전북
-3,628	-1,565	-810	-1,253

4.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적 근거 마련(소방청)

◇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체계적인 지원 및 안정과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1 관계규정

○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0조의2,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2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24.2.13.)에 따른 시행령 개정 완료(시행 '24.8.14.)

-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무정립 △인력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위임 △정보처리** 등의 내용 포함

○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 수행

○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을 **우선 임명**

-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 자문** 가능

○ 또한, 소방활동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

- 이와 관련 소방청은 향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 마련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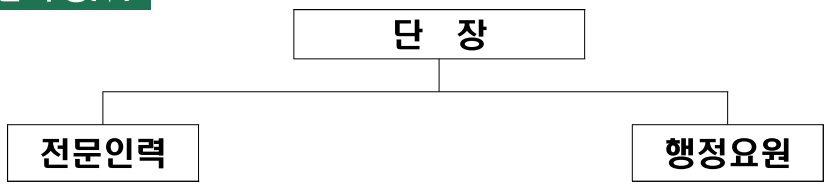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소방행정과]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계획

○ **(목적)**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정책 수립 및 상담·진료 지원 효율 UP

○ **(구성)** 마음건강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 **전문인력*** **채용** 또는 **양성** 필요

소방심리지원단 구성(案)



* ① 심리상담 경력·자격 보유자 ② 심리 및 상담 관련 전공자 ③ 기타 관련업무 경험자

○ **(운영)**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안정 및 회복, 치료 지원 추진

【 주요업무 】	【 프로그램 】
◦ 심리상담 지원, 현장긴급심리상담 지원 ◦ 정신건강 증진·자살예방 대책 추진 ◦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 등의 관리 ◦ 심신건강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등	◦ **(상담지원)** 찾아가는 상담실 ◦ **(치유지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진료지원)** 마음건강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심리지원)** 소방공무원 긴급심리지원

□ 추진사항 (향후계획)

○ **(전문인력 양성지원)** 소방전문상담학과 학위 취득 지원 (등록금 50% 지원)

- 소방의 특성 및 문화를 이해하는 '동료상담사' 양성* : '24년 2명, '25년 2명 (예정)

* 소방전문상담학과 졸업 후 **상담자격 취득 시** 5년간 **'동료상담사'** 활동 (의무)

5. 공간재구조화 실행 계획 (교육부)

◇ 학령인구 급감, 학교 노후시설 증가에 따른 학생 배치,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강화 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주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

Ⅰ.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1 추진배경

○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에서 **학습자 중심**의 **질적 공간 성능 향상**으로 **전환**하고, 향후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노후 학교시설**은 **지속 증가**하여(연평균 202만㎡) **학생 배치, 지속 가능성** 및 건축물생애주기비용 등을 **종합 고려**한 개선 필요

○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에서 **학교 역할**에 대한 **기대 증가**

2 주요경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정부합동, '20.7.)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계획 발표**('20.7.)

< 주요 내용 >

- **(사업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
- **(총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21.3.)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수립·발표('23.11.)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공간재구조화사업(지방비 100%)으로 전환

Ⅱ. 추진성과

1 추진현황

(`24. 6월말 기준, 단위 : 학교수)

구분	대상 학교 수					단계별 추진 현황					
	유·특	초	중	고	계	사전기획	설계	공사	완료	BTL	계
합 계	7	461	184	261	913	14	190	378	188	143	913
'21년 대상	2	239	80	116	437	1	24	205	142	65	437
'22년 대상	3	147	63	96	309	5	54	160	45	42	309
'23년 대상	2	75	41	49	167	8	112	10	1	36	167
'24년 대상	1	93	36	64	194	194					194

2 주요성과

○ 학교 공간재구조화를 통한 미래교육 대응

–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유연한 공간 조성, 사용자 중심의 다목적, 가변적 맞춤형 교육활동 환경 제공

○ 역량 강화 지원

– **(전문지원기관)** 사업 단계별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한국교육시설안전원) **민자사업·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전문기관 운영(한국교육개발원)

– **(수요자 맞춤형 연수)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사전기획가, 사업추진교 학교장** 등 대상별 연수 추진 및 **원격 직무연수** 개발·운영

○ 인식 개선 및 소통 강화

– **(인식제고) 사업 취지** 및 **방향성 공유**를 위한 **사업설명회** 실시, 완공학교 중 **우수사례 발굴** 및 SNS **채널 운영** 등을 통한 안내 및 홍보

– **(시도협의회)**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급·실무자급·전문직 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해 교육청 **사업추진 고충 해소** 및 **우수사례 공유**

Ⅲ. 비전 및 목표

비 전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
목 표	학생 중심의 디지털 기반 공간재구조화

핵심요소		
	공간혁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디지털 전환**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디지털 학습환경
	그린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의 체험장	**학교 복합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류의 거점
	안전 공사 중·후 안전한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제공	**지역 특화**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특화 모델 정착

Ⅳ. 사업 실행계획(안)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노후 학교시설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 (**사업 기간**) 2024~2028(5년간, 예산투입년도 기준)

○ (**사업 물량**)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 **1,700동**(1동은 2,750㎡)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안전등급 D·E등급)은 40년 미경과된 건물도 사업 추진 가능

【 시·도교육청별 사업물량 배분(안)*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물량(동)	1,700	294	146	80	46	27	51	34	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물량(동)	228	68	61	114	90	136	148	136	34

* 시·도교육청 중장기 계획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업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지방비 10.6조원**(※ 동당 단가 62.26억원('24.현재 불변가 기준))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물량(동)	400	400	300	300	300	**1,700**
총사업비(억원)	24,904	24,904	18,678	18,678	18,678	**105,842**
투자액*(억원)	10,182	14,421	15,477	20,286	24,935	**85,301**

○ **(시도교육청별 중장기계획 수립) 배정물량, 사업비**, 교육청별 노후시설 현황 및 자체 **재정여건**, **지역특화** 등을 고려한 **자체계획** 수립

– 40년 이상 **노후시설 현황 분석**, **추진 물량** 및 **시기**, 연도별 **투자계획** (공간재구조화사업비 + 자체예산), 5년 후 **성과목표** 등 제시

– **계획 물량**(사업비)이 **배정 물량**(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타당성 증명** 필요

– 시도교육청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달성도**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실행력 담보**('25~)

2 추진 방향

○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공간재구조화

– 입학초기 적응 활동, **놀이 및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초등)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를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규모**, **유연한 공간** 활용 및 **다목적성**의 학습공간 조성(중등)

- **사용자 참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학교별 **중점·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의 **중점(특화) 공간**과 **연계공간** 조성(공통)

○ 디지털·AI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확충

- **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확대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등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 충전 환경, 지원 공간 등 **인프라 필수 개선**

※ AIDT : ('25) 초3·4, 중1, 고[공통·일반선택과목] → ('26) 초5·6, 중2 → ('27) 중3

○ 지역 중심으로서의 학교 역할 강화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문화·예술 공간 조성**(복합화 요소 강화)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조성

- **고효율 설비·자재**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및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천**
- 실내 정원, 연못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학교 내에 조성하여 학생·교직원, 지역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3 추진 절차

1 지역중심의 사업 추진 절차 개편

○ 교육부 주도의 **검토위원회**와 **컨설팅**은 **생략**하되, 3단계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 기능**을 **개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확인**

○ 사업추진 **관련 행정절차**(공유재산심의, 자체투자심사 등)는 기존과 같이 **공공건축심의 이전**에 **동시 진행** 가능

2 사전기획 세부 절차

□ 〈1단계〉 대상학교 선정

○ (선정 기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기준**에 따라 **선정**

- **학생배치계획**(학생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과 **학교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조정

○ **(선정 절차) 교육청**은 **사전에 반드시 학교 구성원 동의** 및 **학교의 사업 추진 의사 확인** 후 대상 선정

□ 〈2단계〉 사전기획

○ **(고시 개정)** 사전기획의 **과업**을 보다 **명확**하고 **간소화**하여 사전기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 추진('24년 중)

- **사업 규모** 설정 기준 **명확화**, **사용자 참여**를 통한 **도출 내용 구체화** 및 간소화, **적정성 검토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고시)」

○ **(적정 사업규모 설정) 지역 학령인구** 추세 및 **학교 통·폐합** 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사업의 적정 규모 설정**

- **전국(지역)** 단위의 **학교급별 평균 실별 비율** 및 학생 **1인당 연면적** 등을 **비교·분석**하여 학교의 **적정 규모 산출**

○ **(과업설명서 개발)** 사전기획 업무 관계자의 **명확한 업무 범위** 및 **역할 정립, 공간과 연계된 교육기획**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참여 통합 기술**

- 교육(지원청)은 발주 전 **체크리스트**(발주기관용) **작성** 및 사전기획 착수 전 **기초자료, 자체 지침** 등 **자료 제공**

□ 〈3단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검토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

※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검토절차)**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호 **사전기획적정성 검토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

○ **(재신청 및 철회)** (재신청) 다음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재신청**

-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페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철회) 적정성 검토 요청 후 사업 취소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 기관에 **적정성 검토 철회**를 **요청**

3 사전기획 연계 사용자 참여 설계

○ **(소통 강화) 사전기획**에서 **수렴·합의**된 공간 기획의 취지와 의도가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설계자와의 소통 확대**

※ 공간재구조화 사업 전 단계에 사전기획가(공간기획가, 교육기획가)의 참여 유도

○ **(지침서 반영)** 주요 설계지침서에 **사전기획 결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계 공모자를 대상으로 **해당 결과 공유**

※ 사전기획 설계 구현을 위해 핵심사항은 설계지침서에 방안 제시

4 공사추진

□ 공사기간 안전관리

○ **(통학로 안전)** 학생 등·하교 및 교육활동 동선을 고려하여 **공사 차량 진·출입로 별도 배치** 및 **보차분리** 등 **통학로 안전관리 철저**

○ **(관리 감독 강화)** 설계 의도 구현 및 공사 중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시행

* 안전한 공사관리·감독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 기준 이상으로 강화된 감리기준을 적용하도록 旣 안내('21.10.5.)

□ 공사기간 학습권 보장

○ **(임시교사 활용)** 공사기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시 **모듈러 교사** 설치, **유휴교실 및 인근 학교 등 활용**

○ **(학습 환경 보장)**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에 의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사시간 조정, 차폐막으로 분리** 등 조치

○ **(안전 가이드 활용)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학교에서 꼭 필요한 **자료 중심 안전 가이드** 개발('23년 보급)

Ⅴ. 추진 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상학교	전문지원기관
• 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 수립 • 예산(국비+지방비) 교부 • 교육청 예산 편성 및 결산 점검 • 보조금 집행점검 (서면·현장) • 검토위원회 운영 ('24년 한시)	• 공간재구조화사업 자체계획 수립 • 사업비 예·결산 및 집행·정산 •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규모 등 확정 • 사전기획 업무수행 방식 결정 • 사전기획 자체 검토위원회 운영(필요시) • 각종 행정절차 이행 (공공건축 심의,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 설계 및 공사 (경기도교육청) • 분담금 관리 주관 • 교육청 의견 수렴 • 교육부, 전문지원기관 간 정례 업무협의	•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구성원 협의·동의 • 사업신청서 작성 •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협조(현황 분석, 미래교육 방향 설정, 사용자 참여 설계 등) (사전기획전문가 참여) 사전기획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세부내용 작성을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기획 업무 수행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청·학교 현장 지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검토위원회 운영지원 및 컨설팅 지원 • 각종 협의체 운영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연수 및 홍보 • 각종 도움자료 개발 • 정책지원 연구개발 • 누리집 및 SNS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 초·중등 민자사업 단계별 원스톱 지원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고시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실시협약 검토, 관리운영권 설정 지원 등) • 담당자 교육 연수 • 정보화시스템 운영 • 정책연구 도움자료 개발

2 향후 일정

○ 2024년도 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 안내('24. 7.)
○ 교육청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공간재구조화사업) 수립·제출(~'24. 8.)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공간재구조화사업) 협의('24. 9.~)

《 전북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시설과]

○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 정부에서 2021년부터 추진하였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중단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23.11)에 따라서 **2024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등에 맞게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추진하며 사업물량 배분안을 살펴보면 전체 1,700동(1동 2,750㎡) 중 **전북은 90동(247,500㎡)이 해당 전체 사업물량의 5.2%, 시도교육청 중 8위로 배정 물량이 많음**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재학생 60명 미만은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음

○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국비 지원없이 **교부금 및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대상학교 선정 시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및 학생 배치계획 등 검토가 필요**

○ 최근 **남원지역 3개교(금지중, 송동중, 수지중) 통합중학교 설립 추진** 사례와 같이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적정 규모 추진 부서와 TF구성을 통한 학교 선정**으로 지속 가능성 및 공간재구조화를 통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구심점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서울특별시)

◇ 장애인 친화 전용 이·미용 시설 설치 지원으로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 증진 향상

1 추진배경

○ 기존 복지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미용서비스는 단순 커트 위주로, 이용자의 욕구와 편의를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음

○ 장애인들이 일반 이·미용실을 이용 시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 및 장비 부재와 주변의 편견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옴

2 주요내용

○ **(사업대상)**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자치구별 지원대상 상이**

○ **(사업내용)** 저렴한 비용의 **이·미용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상담 등**

① **노원구** : 장애인 전용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수탁) 2개소 운영('22.09.~)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금 50% 할인

② **서초구** : 장애인 전용 미용실 '헤어한우리'(서초구장애인복지관 수탁) 1개소 운영 및 관내 미용실 4곳 '장애인친화미용실' 협약('24.07.~)

* 장애인전용미용실 :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전담 사회복지사 상주 등
협약 미용실(민간) : 휠체어 경사로 설치 지원, 장애인 손님 10% 할인 지원 등

③ **동작구** : 관내 미용실 15곳 '장애인친화미용실' 협약 및 운영('24.08.~)

* 동마다 1곳씩 지정, 중증장애인 대상, 경사로 및 샴푸대 등 비치 시설 지원 등
** 2024년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3 기대효과

○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환경과 다양한 전문 미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심리적 만족감 증진 및 복리 증진 기여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 50% 추가할인 등	-'장애장도가 심한' 장애인 월1만원 한도지원 등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 장애인이 많은 자치구**에 속하는 편으로, '21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사업>**을 서울 내 최초 운영하였고,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동 사업이 서울 전역 및 타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음

○ 최근 광역지자체에서도 동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위탁 관련,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이용료 감면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24.08.). 시·군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도에서 사업을 운영·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음

<참고>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북자치도 또한 전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미용 봉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증·중증 장애인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미용실'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함

○ 또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2]' 결과를 보면, 직전 조사연도(2018년)에 비해 설치율은 89.2%로, 적정 설치율은 79.2%로 각각 9.0%, 4.4% 높아짐.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장애인 접근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 동 현황조사를 보면,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는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 단위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아 설치가 저조한 편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하위 5개 지역>

지역	대 상 건물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2018년	증감
전남	10,440	84.4% (71.5%)	73.2% (65.4%)	11.2%p (6.1%p)
강원	5,794	85.1% (73.9%)	78.7% (72.7%)	6.4%p (1.2%p)
경북	11,842	86.7% (76.6%)	74.5% (68.2%)	12.2%p (8.4%p)
경남	12,466	87.2% (75.2%)	77.5% (71.2%)	9.7%p (4.0%p)
전북	**11,317**	**87.2% (75.3%)**	**77.2% (71.2%)**	**10.0%p (4.1%p)**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미용실 사업>** 등 장애인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북자치도 현황에 맞게 확대가 필요함

* '**23년 전북자치도 등록장애인**은 130,189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의 약 7.4%**에 해당 (심한 장애 47,278명, 심하지 않은 장애 82,911명)

2) 보건복지부('24.04. 발표) *조사기간: '23.03.~12./조사내용: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등 26종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참고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8.12.] (제정) 2024-08-12 조례 제 57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이·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미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이·미용시설 세부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미용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
2. 이·미용시설 이용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이·미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727호, 202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대전시의 반려동물 친화 도시 구축**

1 현황 및 추진배경

○ 최근 4년간('19~'22년) 대전시 반려동물 누적 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2022년에는 10만 마리를 넘어서 인구수 대비 동물등록률이 7.1%로 전국으로 네 번째로 높아짐

* ('201년) 7만 9,222마리 → ('21년) 9만 127마리 → ('22년) 10만 106마리

○ 대전시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에 더불어, **저소득층 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반려동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필요성 제기

2 주요내용

○ (접수기간) 1차. 2024.02.13.(화)~03.04.(월) 2차. 04.15.(월)~05.03.(금)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사회적약자* 소유 반려동물**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반려동물(개,고양이)에 대한 의료비 및 펫 보험료 지원**

* 1명 당 25만원 사용 시 최대 20만원 지원(25만원 미만 사용시 80% 지원)

** 해당 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반려동물의 보험료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심사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후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3 기대효과

○ 사회적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 최근 1인가구 및 고령화 등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따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동물방역과]

○ 2023년 전북자치도 신규 등록된 반려견 및 반려묘는 9,976마리(누적 92,825마리)로 이는 작년 한 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 6,625명을 뛰어넘는 수치로 점점 늘어나는 반려 가구의 추세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 확대가 필요해짐 <참고1> 2023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 또한, **동물복지 기반 시설 조성**(반려동물 놀이시설,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 지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과 **동물보호·복지사업**(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및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 에 **총 80억원 규모로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전주시, 김제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및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전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비 총 2천만원)

○ 최근 광역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 대상「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제정**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을 통해 **반려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 정책**을 벌이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민간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도 함 <참고2>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안내

○ 이 밖에도, **경기도는 올해 사회적 배려 계층과 더불어 소득과 무관하게 1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비 지원 등 **지자체별 반려동물 의료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23 반려동물 보고서[3]>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반려동물을 위해 치료비를 지출한 가구는 73.4%**로 **연평균 78만 7천원을 지출**했다고 응답함. **반려동물 양육 시 반려 가구의 가장 큰 관심은 '반려동물 건강관리'** (55%)였으며,

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3.06.발표)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방법'(68.6%)과 '질병진단 후 케어방법'(55.7%)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걸로 나타남

○ 반려가구 진료비 부담 경감과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고 **'24년부터 1인 이상 수의사가 있는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 확대

-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2024.01.05.부터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 1인 동물병원 포함)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전혈구검사 및 엑스선검사 중 해당 동물 **병원에서 진료 중인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의무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해야 함

cf.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홈페이지** (www.animalclinicfee.or.kr)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동물병원 치료비 의무 게시'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격공시제 제도 정착을 위해, **전북자치도 단위의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동물병원 치료비 정보공개 및 홍보·캠페인**도 요구됨

	
<경기도> -최대 2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4만원) -의료비(백신접종,질병검사 등), 장례비 지원	**<대전시>** -최대 20만원 지원(25만원 미만 시 80%지원) -질병검사, 치료 등 의료비만 지원

참고1 2023년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 및 전북자치도 현황

◆ 반려동물 등록 현황

(전국 현황) 2023년 전국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마리**로, 누적등록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마리임

·개·고양이 등록(신규): ('21)51만 마리 → ('22)30.3 → ('23) 27.1(전년대비 10.4% 감소)

(**누적**): ('21) 278.3만 마리 → ('22)305.4 → ('23)328.6(**전년대비 7.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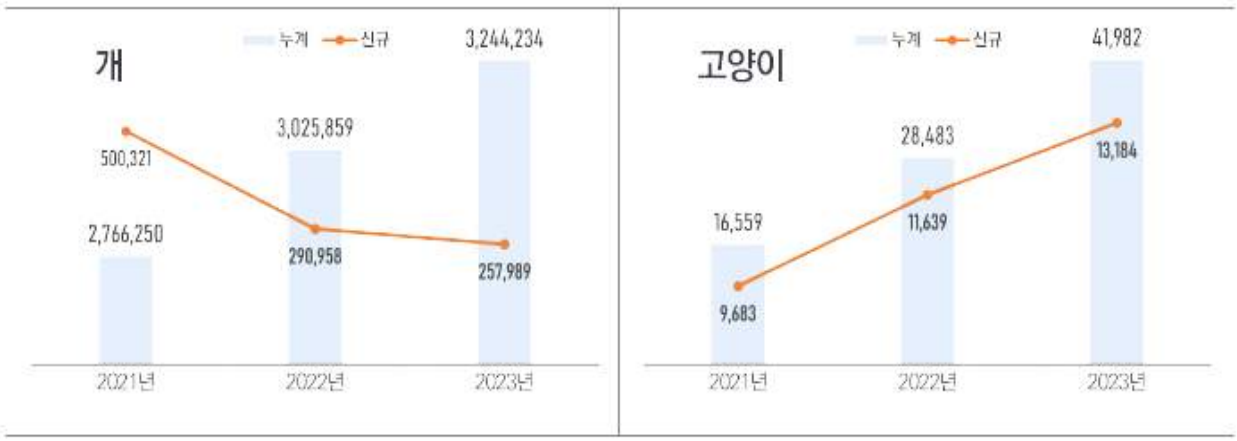
현재 고양이 등록은 선택이지만, **동물 유실방지 등을 위해 고양이 신규등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무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는 목걸이형 등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고양이 등록(신규): ('21) 9천 마리→ ('22) 1만 1천→ ('23) 1만 3천

·외장형/내장형 비율: ('21) 54.5%/45.5(차이 9.0)→ ('22) 53.8/46.2(7.6)→ ('23) 51.4/48.6(2.8)

〈그림 1-1〉 개·고양이 동물등록 현황

(단위 : 마리)



신규등록 동물 등록 소유자의 약 25%가 40대였으며 20대·30대가 각 22%였으며,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60.9%로 남성(38.9%)보다 약 1.6배 높음.** 누적 등록 현황을 보더라도 동물 소유자의 약 44%가 30~40대이며, 여성이 69.3%로 남성보다 2배 이상 소유하고 있음 <표1>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표 1> 동물 소유자 연령별·성별 형태

(단위: %)

구분	신규 등록			누적 등록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99.8%	38.9%	**60.9%**	99.9%	30.6%	**69.3%**
19세 미만	0.5	0.1	0.4	0.3	0.1	0.2
20~29세	22.0	7.2	14.8	11.3	2.8	8.5
30~39세	**22.1**	**9.1**	**13.0**	**21.8**	**6.5**	**15.3**
40~49세	**25.1**	**8.5**	**16.6**	**22.0**	**6.1**	**15.9**
50~59세	16.2	6.6	9.6	23.2	6.5	16.7
60세 이상	14.0	7.4	6.6	21.4	8.6	12.8
법인	0.2%			0.1%		

(전북 현황) 전북자치도 **반려견·반려묘 신규 등록 수는 9,976마리**로 누적 등록 수는 총 92,825마리로 조사됨. 특히, **반려묘의 경우 전년 대비 82.7% 증가**하였으며<표2-3>, **반려견의 누적 등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2-1> 반려견·반려묘 등록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신규 등록			누적 등록*		
	계	내장형	외장형	계	내장형	외장형
전국	271,173	138,508	132,665	3,286,216	1,658,538	1,627,678
전북	**9,976**	6,604	3,372	**92,825**	45,329	47,496

*죽은 개체를 제외한 조사결과

<표 2-2> 반려견 신규·누적 등록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3년 지역별 비율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국	**신규**	500,321	290,958	257,989	100%	-32,696	-11.3%
	누적	2,766,250	3,025,859	3,244,234	100%	**218,375**	**7.2%**
전북	**신규**	18,528	10,416	9,633	3.7%	-783	-7.5%
	누적	72,844	83,412	92,056	2.8%	**8,644**	**10.4%**

<표 2-3> 반려묘 신규·누적 등록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3년 지역별 비율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국	신규	9,683	11,639	13,184	100%	1,545	13.3%
	누적	16,559	28,483	41,982	100%	**13,499**	**47.4%**
전북	신규	91	269	343	2.6%	74	27.5%
	누적	132	421	769	1.8%	**348**	**82.7%**

◆ 유실·유기동물 신고 및 구조 현황

(전국 현황)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11만 3천 마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함.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하였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하였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는 전년 대비 10.1%, 26.8% 증가하였음

· 구조 현황: ('21) 11.83만 마리 → ('22) 11.34 → ('23)11.31

· 종사 인력/ 운영비: ('21)933명/297억원 → ('22)893명/295억원 → ('23)984명/ 374억원

(전북 현황)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현황을 보면, 전북자치도의 **총 구조동물수는 9,084마리(8%)로 전국으로 4번째로 많은** 편임(경기 19.4%, 경남 9.9%) **전북의 구조동물 입양 건수**는 **2,890마리로 전국 평균(24.2%)보다 7.6%높으며,** 입양 건수로 비교하면 경기(4,725마리), 전북(2,890마리) 순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음**<표3-2>

<표 3-1>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총 구조동물수	지역별 비율*	개	고양이	기타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국	**113,072**	100%	80,467	30,889	1,716	-368	-03%
전북	**9,084**	**8%**	6,494	2,549	41	308	3.5%

*경기(19.4%), 경남(9.9%), 전남(8.6%), 전북(8%) 순으로 지역별 차지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표 3-2> 구조동물 보호·관리조치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총 구조동물수	보호중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기타 (방사 등)
전국	**113,072**	15,093	13,628	**27,343**	3,318	31,238	20,346	2,106
	100.0%	13.3%	12.1%	**24.2%**	2.9%	**27.6%**	18%	1.9%
전북	**9,084**	**1,705**	677	**2,890 (31.8%)**	432	**2,425** (26.7%)	791	164

*구조동물 입양건수: 경기(4,725마리, 17.3%), 전북(2,890마리, 10.6%), 경북(2,854마리) 차지

전북자치도의 동물보호센터는 총 24개로 지자체 직영 6개소, 위탁 18개소로 전년 대비 2곳이 감소함(각기 다른 지자체로부터 중복 지정된 경우 제외)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동안 보호센터 종사인원은 109명으로 약 32억 7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음 <표3-3>

<표 3-3> 2023년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만원, 일, %)

구분	종사 인원(명)	비용(만원)		평균 보호 기간(일)	전년대비 인원		전년대비 총비용(만원)	
		총비용	마리당 비용*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전국	**984**	3,738,512	33.1	27.8	91	6.8%	790,511	26.8%
전북	**109**	**326,684**	36.0	33.2	4	3.8%	-4,134	-1.2%

*마리당 평균비용: 동물보호센터 비용/구조동물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재구성함 (농림축산검역본부, '24.07.발표)

참고2 서울특별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안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동물의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미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는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3월 ~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내용
필수진료(30만원 상당), 선택진료(20만원 이내)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 / 회(최대 1만원)
-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진료비 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 준비물
  ① 신분증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누리집)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 (https://animal.seoul.go.kr)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항목

필수진료



- 개

진료명		성견		자견 (1년령 미만)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기초검진	X-ray	●					
	혈액검사	●					
	CCV / CPV / Giardia 검사			●			
예방접종	종합백신	●		●	●	●	●
	코로나	●		●	●		
	인플루엔자		●				
	켄넬코프		●			●	●
	광견병		●				●
심장사상충	투약 전 검사	●					
	투약(3회분)	●			●		
보호자 부담	세부	5,000	5,000	5,000	5,000	0	0
	합계	10,000		10,000			

- 고양이

진료명		성묘		자묘 (1년령 미만)		
		1차	2차	1차	2차	3차
기초검진	혈액검사	●				
	FeLV			●		
	FIV			●		
예방접종	종합백신		●	●	●	●
	백혈병		●	●	●	●
	광견병	●				●
심장사상충	투약 전 검사	●				
	도프(3회분)	●			●	
보호자 부담	세부	5,000	5,000	5,000	5,000	0
	합계	10,000		10,000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 중성화 수술

※ 선택진료비 20만원 이내 지원

※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에 총 112개 민간 동물병원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운영 중**

<출처: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3.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추진(서울시)

◇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

1 추진배경

○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누락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 지정. 노인적합형 일자리 연계**

*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 활용

**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의 형태는 유사하나 노동의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하여 연계할 계획

○ **폐지수집 지속 원할 땐, 평균 수입 2배 급여방식으로 지급**하는 「**폐지수집 일자리단 사업**」* 참여하도록 함.

- 현재 13개구 1,253명 향후 1,800명(1.5배 정도)으로 확대 예정

*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가져다 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임

○ 안전보험 가입,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지급, 휴게시설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에 대비
-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

- 민간기업 후원 연계하여 경광등, 경음기 등이 부착된 리어카와 이동이 용이한 안전 손수레와 야간에 식별하기 쉽도록 야광조끼·밴드 등도 지원, 한여름과 한겨울에 냉방, 방한 용품도 지급 계획

※ '24. 6월 SK텔레콤 지원으로 경량리어카 42대, 쿨타워 및 쿨토시 2040개 지원

- 서울시 관내 고물상(362개)와 협의하여 고물상내 의자, 음수대 등을 갖춘 간이휴게소 설치 및 각종 복지정보 제공 계획

< '24. 7. 서울시 폐지 수집 어르신 현황 >

○ 서울시 폐지수집노인 : 3,007명

- 남자 1,168명(39%), 여자 1,839명(61%)
- **80대 이상 1,412명(47%),** 70대 1,231명(41%), 60대 364명(12%)

※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2024.2.1.~5.24.) 결과 제출 이후 서울시 자체 추가 보완 조사 결과 3,007명으로 집계

○ 노인일자리 참여 : 1,468명(49%)

- 폐지수집 사업단 참여 : 13개자치구 14개사업단 1,253명(42%)

※ 환경미화,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노노케어 등 일반 일자리 215명

- 폐지수입 사업단 참여소득 : 305천원(전국평균 373천원)

○ 월평균 소득 : 895천원(전국 평균 766천원)

※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 근로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 금액임

※ 2023년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시 폐지수집 활동 평균 소득 : 15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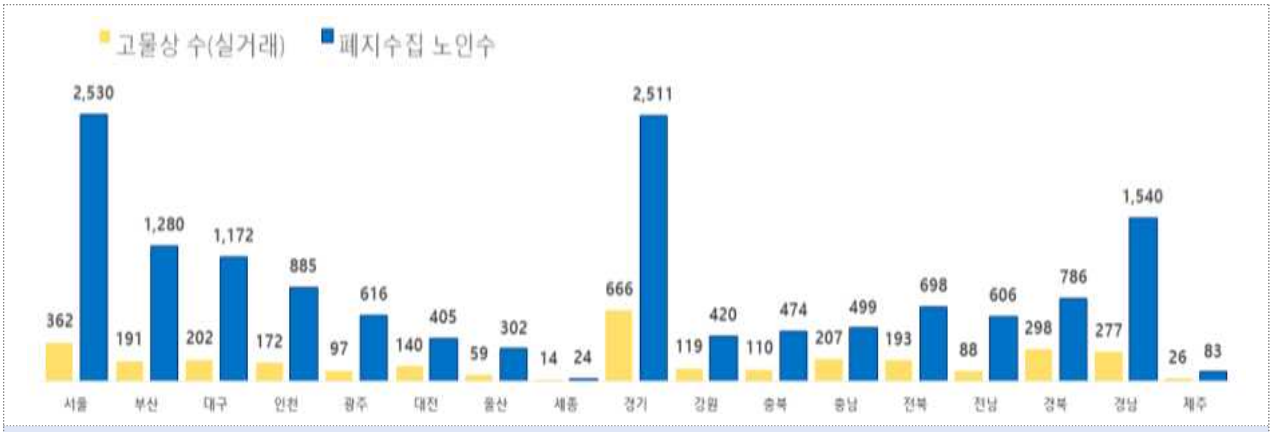
○ 생활수준 : 기초수급자 23% (전국 평균 28%)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률 : 84% (전국 평균 89%)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고령친화정책과]

○ 보건복지부에서는 ‘24년 2월부터 5월말까지 폐지수입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의 폐지수입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북자치도의 폐지수입 노인은 698명으로 확인되었음



<시도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24.2 ~ 5월)>

(단위 : 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4,831	2,530	1,280	1,172	885	616	405	302	2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11	420	474	499	698	606	786	1,540	83

○ ’24년 폐지수입 노인 전수조사에 따르면, 평균연령은 78.1세(여성이 55.3%, 75세 이상이 70.7%), 평균 소득은 76.6만원임. 폐지수집으로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인 가구 : 713,102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 불과함

○ 전북자치도는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연계 사업’ 및 ‘희망 서비스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연계 사업 현황 >

(단위 : 명)

구분	발굴 인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인원								대기자 현황**
		합계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선도 모델	시니어 인턴십	취업 알선형	
전북	698	258	33.5%	235	13	10	-	-	1	5

※ 제외(435명) :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제외대상

< 희망서비스 연계 현황 >

(단위 : 명)

계	기초생활	긴급지원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기타(민간지원 등)
854	81	24	258	188	120	183

○ 광주광역시는 폐지수집 노인에게 재활용품 선별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경기도는 DB손해보험과, 서울 금천구는 KB 국민은행과 협업하여 각종 방한,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의 폐지수집 노인인구 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4위임. 폐지수집 노인에게 적정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인원이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요청됨

< 시도별 폐지수집노인 추정치 대비 평균 발굴인원 현황('24. 5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추정 인원(A)	42,000	4,515	3,062	2,199	2,293	1,126	1,215	872	165	10,203	1,836	1,697	2,075	1,917	1,905	3,382	3,154	387
발굴 인원(B)	14,831	2,530	1,280	1,172	885	616	405	302	24	2,511	420	474	499	698	606	788	1,540	83
비율 (B/A)	35.3	54.9	42.1	53.3	38.2	54.5	29.8	34.1	13.9	25.1	19.3	27.0	20.3	36.4	32.0	22.4	42.5	19.9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참고 17개 시도 인구 수 대비 폐지수입 노인 인구 수 비율

지역명	인구 수	폐지수입 노인 수	비율	비고
서울특별시	9,360,400	2,530	0.027%	
부산광역시	3,278,280	1,280	0.039%	
대구광역시	2,366,660	1,172	0.050%	1
인천광역시	3,012,997	885	0.029%	
광주광역시	1,412,986	616	0.044%	3
대전광역시	1,439,889	405	0.028%	
울산광역시	1,099,866	302	0.027%	
세종특별자치시	388,788	24	0.006%	
경기도	13,669,469	2,511	0.018%	
강원특별자치도	1,521,877	420	0.028%	
충청북도	1,591,182	474	0.030%	
충청남도	2,135,171	499	0.023%	
전북특별자치도	**1,744,661**	**698**	**0.040%**	4
전라남도	1,793,747	606	0.034%	
경상북도	2,542,072	786	0.031%	
경상남도	3,235,125	1,540	0.048%	2
제주특별자치도	672,068	83	0.012%	
계	51,265,238	14,831		

(인구 수 : '24. 7. 통계청 참조)

4.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 추진(경기도)

◇ 코로나19 등 플랫폼노동 증가로 인한 이동노동자 복지 및 안전지원 확대
◇ 취약노동자 이해 대변체계 구축 및 노동역량 강화로 노동자 권익 보호 필요

1 추진배경

○ '존중받는 플랫폼 노동'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노동자* 종합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

○ 플랫폼노동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확대 및 쉼터 운영 지원을 통한 플랫폼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및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 ('24년 예산) 440백만원(도비 100%) / 공기관대행(경기도일자리재단)

- (사업내용) 산재보험료 부담분 80% 최대 지원(2,800건)
- (지원대상) ('21년) 배달노동자 → ('22년) 배달노동자 및 중소사업주 →
  ('23년)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운전) 및 중소사업주 →
  ('24년) 플랫폼노동자 및 중소사업주, 화물차주

○ (추진실적) ('21년) 2,160건 지급(목표대비 108%) ('22년) 2,594건(목표대비 99%)
('23년) 4,410건 지급(목표대비 126%)

□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 ('24년 예산) 200백만원(도비 100%) / 공기관대행(경기도일자리재단)

- (사업내용) 온라인·실습 안전교육(2,000명), 안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지원대상) ('21~23년) 배달노동자 → ('24년)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추진실적

- ('21년) 배달노동자 2,273명 교육 수료, 안전배달인식개선 캠페인 2회

총계(누적)	강사양성	찾아가는 안전교육	벌점감경교육	道 특화교육	온라인 교육
2,273명	63명	846명	120명	579명	665명

- ('22년) 배달노동자 2,236명 교육 수료, 안전배달인식개선 캠페인 2회

총계(누적)	강사양성	찾아가는 교육	벌점감경교육	안전특화 교육	실습교육	온라인 교육
2,236명	100명	604명	37명	271명	50명	1,174명

- ('23년) 배달노동자 3,206명 교육 수료, 대리운전 안전교육 교재 발간

총계(누적)	찾아가는 안전교육	주행실습 교육	온라인 교육	안전인식 캠페인
3,206명	901명	191명	2,114	4회

□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 ('24년 예산)

- (쉼터 운영 지원) 2,560백만(도비 30%, 시비 70%)
- (간이쉼터 설치 지원) 2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 (추진실적)

- (운영현황) 전국 最多 20개 쉼터 조성·운영중(거점 10, 간이 10)

  * (거점)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안양, 의왕, 포천

    (간이) 고양(2), 파주, 구리, 광명, 용인, 안산, 성남, 이천, 남양주

- (이용자 수) '23년 245,984명(거점 108,104 / 간이 137,880)

  * (이용자 현황) 7,080명('20) →27,609명('21) →134,229명('22) →245,984명('23)

- (설치계획) '24년 간이쉼터 4개소 설치 예정(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3 기대효과

○ 재해율이 높은 플랫폼노동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환경 개선

○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북자치도에서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4. 2.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임

※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낮음. 전북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

○ 조례의 시행에 따라서, 전북자치도에서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플랫폼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최근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였음

○ 전북자치도에서도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플랫폼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기존 노동 관계법 등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및 직종

○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65만 9천 명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견상 독립사업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유사하고, 노무제공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손익 계산 등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영인과 구분됨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인의 개념 비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인
계약형태	근로계약	위탁사업자계약, 임대차계약, 구두계약 등	타인과의 계약 불요 또는 가맹계약 등
노무제공의 주체	본인	본인	본인 또는 타인 고용
노무제공의 대가	임금	정해진 수수료, 임대료 등 수입	독자적 사업 운영
사업장 전속성	특정사업장 전속	① 특정사업장 전속형 ② 복수사업장 유형	해당 없음
작업도구 등 소유관계	미소유	① 미소유 유형 ② 소유 유형	작업장소, 도구 등 소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직 군	직 종
1. 교육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2. 문화·예술·스포츠	경기보조원, 스포츠레슨강사,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연극배우, 외주카메라감독, 공연스태프, 관광가이드 등
3. 금융보험	보험모집인, 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채권추심인 등
4. 상품·서비스 판매	텔레마케터, 자동차판매원, 음료위탁판매원, 의류위탁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아동도서방문판매원, 상조회사영업사원 등
5. 제품설치·수리·검사	검침원, 정수기방문점검원, A/S기사 등
6. 배송·운전	재택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물류배송기사, 화물기사, 학원차량기사, 대리운전기사, 구난차기사, 심부름기사, 배달앱기사 등
7. 건설기계 운전	스카이크레인, 카고크레인, 타워크레인,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펌프카지입기사, 굴삭기기사, 불도저기사 등
8. 기타	헤어디자이너, 간병인, 제화공 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5. 전국 최초 버스 요금 QR코드 결제 시스템 도입(제주특별자치도)

◇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

1 제안 이유

○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은 버스 이용을 위해 한국 화폐를 준비하거나 교통카드 구매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음

- 교통카드의 경우, 여행을 마친 뒤 남은 잔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음

○ 외국인 MZ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제주 관광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키고자 함

※ 외국인 MZ세대의 경우, 버스(27.1%)와 택시(29.6%) 등의 이용 비중이 56.7%에 달함

2 주요내용

○ (내용)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국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 간편하게 제주 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됨

○ (대상) 14개 업체, 868대(도내 전 버스)

○ (예산) 2,000만원(버스 내부 QR코드 부착 및 QR코드 결제 방식 홍보)

○ (결재수단) QR코드 결제는 제로페이*가 중개역할을 담당

*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핀테크(IT기술과 금융의 결합) 기술을 활용한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 (정산방법) 제로페이는 현재 중국 등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페이, 위챗페이 등 9개국* 14개 결제 앱과 연동

* 중국, 홍콩, 필리핀, 마카오, 이탈리아, 태국,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 (수수료) 제주버스 요금 QR코드 결제 수수료는 버스의 공공성을 고려해 0.9%로 책정함(제로페이 일반가맹점 수수료 1.65%/ 교통 카드 결제 수수료 2.24%)

○ (이용방법) 버스 이용자가 버스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요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재함

○ (시행일) ‘24. 8. 1.

○ (홍보방법)

- 주요 관광지와 호텔을 중심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포
- 제주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예정

※ 중화권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설명회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배포되는 여행정보지에 관련 내용을 홍보

3 기대효과

○ 외국인 관광객들의 실제 이용 패턴과 피드백을 분석해 버스 정책에 반영하기 쉬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활용 가능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교통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 운영을 ‘24. 7. 1.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중이고, 8. 1.부터는 QR코드 결제 시스템도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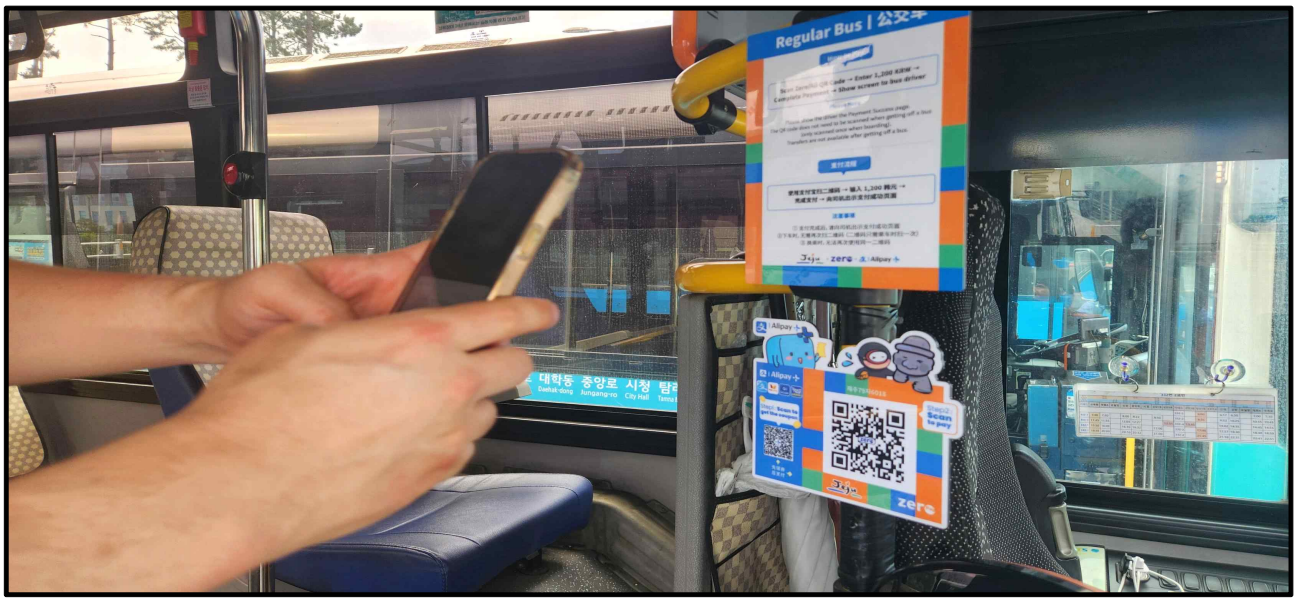
< 현금 없는 버스 운영 지자체 현황 >

지자체	노선	비고
서울특별시	118개 노선	1876대 운영 중
대구광역시	5개 노선	
인천광역시	11개 노선	951대 운영중
대전광역시	109개 모든 노선	
경기도	똑버스 전노선, 경기 프리미엄 전노선	
제주특별자치도	218개 모든 노선	

※ 기초지방자치단체 제외

○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교통서비스의 질 향상 및 외국인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및 **QR코드 결재 시스템 도입**을 전북자치도에서도 검토할 필요성 있음

참 고 버스요금 QR코드(제로페이) 결제 방법





QR 스캔 요금입력 결제 완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토연구원)

《 연구요약 》

◇ 새만금 SOC사업 중 공항, 철도, 도로 분야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새만금 SOC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산업단지, 농생명 단지, 관광 및 레저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공항, 철도, 도로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중임

○ 새만금 사업 중 산업단지 총 투자금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11조 5,954억 원이며, 이 중 2023년에만 약 9조 2,324억 원이 투자되는 등 최근 새만금 산업 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등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분야 SOC의 지원이 적재 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현재의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새만금 SOC사업 절차의 적정성 검토 방법론>



○ 이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등 장래 SOC 계획의 투자시점, SOC 유형 및 연계 계획,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새만금 SOC사업 절차의 적정성 검토

2-1.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절차의 적정성 검토

○ **추진근거의 적법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부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까지의 각 계획*은 모두 추진근거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본 사업과 관련된 각 계획 중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6개 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상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단, 상위계획의 성격이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19.12)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22.06)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의 준수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추진절차(11개 항목)를 준수했는지 검토한 결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항시설법 제3조 및 제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재정법 제50조

○ **평가방법의 합리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9개 항목,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과 관련된 13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침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했음이 확인되었음

○ **자료의 공신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97건의 자료 중 공신력이 있는 95건의 자료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에서는 **294건의 자료 중 공신력이 있는 292건의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 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2건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의 2건은 국내외 사례가 없어 참고한 것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 방법의 합리성** 등 **4개 지표에서는 적정**,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본 연구에서 정한 공신력이 있는 자료의 범주에 해당 하지 않는 2건의 자료가 활용되었으나, 전체 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1% 미만)이 미미하고, 단순 검토 또는 국내외 기관 및 기구에서 관련 정보가 없어 불가피하게 참고한 측면이 있어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내용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갖춘 관련 계획에 연계하고 SOC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하여 온 그간의 경위 등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2-2.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절차의 적정성 검토

○ **추진근거의 적법성**: 본 사업과 관련된 다섯 차례의 계획*은 모두 추진근거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본 사업과 관련된 다섯 차례의 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상위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항만 내 인입선 건설을 위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

○ **추진절차의 준수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검토 대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법령에 명시된 추진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19조

○ **평가방법의 합리성**: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12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침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료의 공신력**: 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128건의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 외 4건은 정책성 분석에서 자제적인 검토를 위해 활용

○ 본 사업은 **추진근거의 적법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등 세 개 지표에서는 적정, 유관계획과의 연계성과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상위계획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중인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또한, 본 연구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자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4건의 자료가 활용되었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2-3.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절차의 적정성 검토

○ **추진근거의 적법성**: 본 사업과 관련된 네 차례*의 계획은 모두 추진근거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새만금 개발기본계획

○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본 사업과 관련된 네 차례의 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상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새만금 개발기본계획

○ **추진절차의 준수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추진절차(10개 항목)를 준수했는지 검토한 결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9

○ **평가방법의 합리성**: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12개 항목,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5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침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했음이 확인되었음

○ **자료의 공신력**: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132건의 자료를, 개발기본계획에서는 93건의 자료 중 **공신력이 있는 82건의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 외 11건은 기존에 없는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참고한 제3의 기관 발행 자료

○ 본 사업은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 방법의 합리성** 등 **네 개 지표에서는 적정,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본 연구에서 정한 공신력이 있는 자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11건의 자료가 활용 됐지만, 자료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12%)이 크지 않고, 기존사례가 없어 불가피하게 참고한 측면이 있어 개발기본계획 내용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3 새만금 SOC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3-1. 새만금 SOC사업 간 연계성 검토 결과

○ **새만금 신공항-새만금항 인입철도 연계를 위한 철도 정거장 배치**

- 기존 공항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의 공항 접근성에 대한 이용자 요구수준과 기존 공항의 접근수단 분담률을 고려할 때,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신공항의 접근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설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항 건설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

○ **새만금 신공항 및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BRT 정차역 배치와 환승시설 마련**

- 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신교통수단(BRT)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신교통수단(BRT)의 정차역이 이용수요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새만금공항역에서 도로-철도 간 환승이 편리해야 함

3-2. 기업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계획인구 영향 진단

○ 분석 결과,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계획된 산업용지**만으로는 향후 새만금권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에 부족**

- **(총량적)** 2050년까지의 예상되는 수요와 비교했을 때, 기본계획에 계획된 산업용지를 전부 써도 **약 550만㎡ (±10%) 정도가 부족**
- **(중단기적)** 10년 내 추가로 공급될 산업용지가 "국가산단 잔여분과 인근 5개 산단" 뿐이라는 전제로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 '30년 전에 공급된다 하더라도 **'35년까지 약 645만㎡의 공급공백 발생**

○ 종합하면, 2050년까지의 수요에 적기 대응하려면 ①**기본계획에 계획된 산업용지보다 550만㎡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② 이렇게 추가된 면적 또는 현재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지만 공급시점이 불투명하거나 후순위인 면적 중에서 **645만㎡(550만㎡+95만㎡)만큼은 늦어도 2030년에 공급**될 수 있게 앞당길 필요

- 일례로, 기본계획상 산업용지 총량을 550만㎡만큼 확대해서 해당 부지를 조기에 공급하고, 그 외에 95만㎡는 후순위로 계획된 산업용지 공급시점을 앞당겨서 조정 등

○ 다만, 본 중단기 수급분석은 향후 10년간의 시간범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시간 범위 밖에서 고려해야 할 수급 불일치 이슈들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기본계획 재수립시 보다 세부적 검토가 필요

- 일례로, 향후 10년만이 아니라 2030년, 2040년, 2050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검토

○ 총량적 측면에서 기본계획보다 **산업용지를 550만㎡ 추가 확대**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인구지표 영향을 분석**하면, 기본계획 대비 **총 유발인구는 약 9.9만**인, **새만금 내 수용인구는 약 3.8만**인이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나타남 (**당초대비 약 14% 증가**)

- 산업용지 총량이 550만㎡만큼 늘어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종사자수는 13,200인**으로 추산(2.4인/천㎡ 적용40))
- 이를 기본계획 인구추정식의 기반부문 종사자수에 반영하여 재산정하면, **기반부문 종사자수**는 93,784인에서 **13,200인이 늘어난 106,984인**이 되며, 여기에 최종계수(3.2317)을 곱한 총 **고용자수(기반+비기반)는 345,742인**, 이에 고용자 1인당 부양인구비를 곱하여 **총 유발인구를 산출하면 806,063인**
-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총 유발인구 중 약 38.1%를 새만금 내부에 수용한다고 가정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새만금 내부 수용인구는 307,431임**

4 새만금 SOC사업 개선과제 제안

4-1.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개선과제

○ **항공화물 수요 및 화물터미널 적정 규모·시기에 대한 추가 검토**

- 새만금신공항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22.06)에서는 기존 실적 기반 항공화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화물터미널 규모(750㎡)를 계획함. 하지만 이와 같은 항공화물 수요예측 방법은 새만금 개발사업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등 Landside 공항시설 설계를 별도 추진 예정('25년경)인바 향후 Landside 공항시설 설계 시 새만금 개발사업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특성을 고려한 항공화물 수요예측을 거쳐 화물터미널의 적정 규모 및 시기에 대해 추가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

○ **친환경 공항 건설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적극 도입
- 자연 생태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 전략 마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차기 새만금 기본계획의 공항 편입 용지 전환(농생명용지→공항용지) 반영**

- 새만금 기본계획('21.02) 이후 고시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22.06)에 따르면 활주로 등 Airside 일부가 새만금 기본계획('21.02)의 농생명용지(농생명권역 3공구 유기농업·조사료 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22.06)상 고시 면적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여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인·허가 중복절차 해소를 위한 협의 및 개선**

-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위치하므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사업시행자 지정, 기본·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 이행 필요
- 따라서 개별법과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중복 이행 또는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간 협의된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필요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의제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를 제안함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일정 검토**

- 신규 노선 취항 계획 마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친환경 공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역 의견수렴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 친화적인 기존 군산공항 유휴 민항시설 활용 방안 마련**

-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기존 군산공항 민항시설이 유휴시설로 남게 됨
- 정부-한국공항공사-지자체 간 협의 및 주변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존 군산공항 유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존 군산공항 주변은 오랜 기간 군용기 및 민항기 소음 피해에 노출된 지역인 만큼 활용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필요

○ **차기 새만금 기본계획의 공항경제특구 계획 구체화**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21.02)의 공항경제특구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유치 업종 등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 개발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다각적인 항공수요 창출 노력**

-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시장 여건과 관련하여 신규 소형운송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에 도서노선(울릉, 흑산) 신규 취항 및 수요 창출을 위한 후속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새만금 국제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중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 지역(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국제선 노선의 신규 취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새만금 개발계획의 미래상에 걸맞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의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 통행 증대 노력, 새만금 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레저 용지의 적기 개발을 통한 국제관광객 유치가 요구됨

○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할 강화**

- 공항활성화를 위한 요소 중 하나는 공항 접근 용이성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주변 지역 간의 버스 노선 신설, 지역 관광 연계 등 전체적인 접근교통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신규 항공사 유치 노력과 지원을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역의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

4-2.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 개선과제

○ 새만금신항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보완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21.12) 이후, 조사에 반영된 새만금신항 건설계획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철도 인입선 건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화물 전용 구간인 새만금신항역~철송장 구간은 신항만건설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여객 및 화물 수송 겸용 기능의 철도이며, 철도사업의 건설기간(통상 설계 및 시공 8년 소요)과 영향권 내 관련 계획 추진 현황을 고려할 때, 신항만 건설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공항 정거장 화물철도 시설 재검토

- 본 사업의 효율화 관점에서 사업 규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때, 여객 수송 기능 시설계획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규모가 이미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위치를 고려할 때 신공항 정거장의 화물철도 시설은 군산항역으로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확정된 철도역 중심의 연계교통망 구축계획 수립

- 정차역 설치계획이 새만금 기본계획 대비 변경됨에 따라 기존 새만금역 예정지 주변 지역에서는 철도역 접근거리가 길어지므로 접근성 개선 대책이 필요함

- 본 사업 철도노선의 지역 간 연결 기능을 고려할 때, 철도역은 권역 내부와 외부를 연계하는 주요 결절점이므로, 지역 내에서 철도역에 접근하는 연계교통체계 마련이 중요함
- 새만금 지역의 지연 간 연계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차기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확정된 철도역 중심의 연계교통망 구축계획 수립이 필요함

○ **수요 맞춤형 열차운행계획 수립**

- 본 사업이 새만금 국제공항 이용자의 접근 교통수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공항 이용객 편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철도역 주변 개발계획 구체화**

- 철도역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철도역을 지역 거점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본 사업노선 철도역은 대규모 신규 개발지역 내에 위치하며, 공항 및 항만과 연계한 경제특구로 개발됨을 고려할 때, 철도역 중심의 복합개발 추진이 필요함

4-3.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개선과제

○ **차기 개발계획에서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개발순서 조정**

- 수변도시 조성 활성화, 항만배후도시, 그린수소복합단지 조기개발에 필요한 공사 차량 진입로 확보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공간 제공을 위해서는 일부 구간을 조기 건설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공사 구간 개발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검토구간으로 분류된 순환링 잔여구간(6.92㎞)은 향후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도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연계 구간 발굴을 병행 추진해야 함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일정 검토**

- 그 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24 상반기 착수)에서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포함한 새만금 주요 도로의 수요를 재검토할 예정임
- 사업 여건과 절차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재개시 준공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일정에 검토가 필요함

○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전북권 BRT 계획과의 연계 추진**

- 차기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시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 도로와 BRT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계획되어 있는 BRT 노선계획을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간선도로 남북2축 북단인 동서 1축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상위계획 및 하위계획 간 조화를 위한 순환링 내 BRT 노선 위치 조정**

-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24년 상반기 착수)에서 신교통수단(BRT) 순환링 구간의 노선을 개발기본계획에 제시된 것처럼 순환링 우측 노선으로 변경하여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에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용자의 편의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고려한 도로관리체계 마련**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초기에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을 결정하여 설계단계부터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만금 동서·남북도로의 사례에서 발생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함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준공된 뒤에도 도로가 원활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은 직접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새만금의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도로관리청과 협업이 필요함

5 새만금 미래산업 방향 및 개발구상 제안

○ 투자유치 급증에 대응한 산업용지 확보 대안 검토

- **배후도시용지**의 경우 새만금 국가산단과는 떨어져 있으나,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이 새만금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점이 **산업입지로서 강점**
- 그 외 고려해볼 수 있는 대표적 대안으로는 **3권역 남측구역**과 **동서도로·남북 도로 교차부 인근**이 있음

○ 새만금 미래산업 방향성 및 개발구상 제안

- 첫째, 남북도로를 따라 **새만금 내부에 중심 산업회랑이 형성**되도록 고려 필요
- 둘째, 새만금 내·외부 동서방향 연계 측면에서 **"새만금 국가산단 - 4권역(배후 도시용지) - 익산~전주~완주"**로 이어지는 **확대된 산업회랑 구축 고려**가능
- 새만금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4권역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관련 기업들과 함께 **물류 혹은 식품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재수립시** 이러한 방향과 틀을 생각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새만금청과 농식품부·전북도 발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푸드허브, 식품허브 관련 용역 연구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화 필요

2.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분석요약 》

◇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자체 조직권 부여, 감사기구 구성 및 감사권한 부여,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신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필요함

□ 들어가며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는 중요한 시대정신, 역사의 흐름 중 하나임

○ 지방자치와 분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2018년 기준으로 각각 7:3 비율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사무에 대한 예산규모가 궁극적으로 6:4정도가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현장을 깊게 들여다보면, 너무도 열악한 현실에 기초적인 지방자치 토대 강화를 위해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주요 이슈 1)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필요…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 현재 전국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임

-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의원정수의 1/2까지만 채용할 수 있음
- 임면권과 지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국회 보좌진들과는 달리, 정책지원관의 임면권 및 지휘 권한은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진 않음
- 특히 지방의원 2명당 한 명 꼴로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하여 정책지원관의 운용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로는 의정활동 지원의 질 저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임

-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정·지원되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오히려 신속성, 정확성, 전문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함

○ 정책지원관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 우선순위 문제 발생, 업무배분의 비효율성을 오로지 정책지원관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기밀성 보장도 어려움

- 경기도의 경우 조례 보유현황과 예산 규모가 40%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2명당 1명 배치되는 정책지원관의 경우, 배정받은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기밀성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됨

〈 최근 4년간 자치법규 및 예산심사 규모 등 현황 〉

구 분		'23년초(A)	'21년초	'19년초(B)	증액규모(A-B)
조례 보유현황	17개 시도 (경기)	13,027건 (1,113건)	11,186건 (967건)	9,264건 (776건)	3,763건(41% ↑) (337건, 43% ↑)
예산 규모 (일반+특별, 당초예산)	17개 시도 (경기)	2,150,581억 (338,105억)	1,864,283억 (288,724억)	1,570,704억 (243,731억)	579,877억(37% ↑) (94,374억, 39% ↑)

* 출처 : 행정안전부 / (기준) 1월 1일

□ (주요 이슈 2) 지방의회 자체 세출예산편성권과 자체 조직권 부여 필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졌지만,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개정 및 폐지, 결산 승인 등에 대해서만 의결이 가능할 뿐 여전히 지방의회의 자체 세출예산편성권과 자체 조직권은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지방의회 기구·정원 자율 결정을 통한 운영을 위해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부여도 보장되어야 함

○ 현행 행정기구(국단위) 하위부서 조직형태에서 의회사무기구에 별도 조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장이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세출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주요 이슈 3) 지방의회사무처에 감사기구 구성 및 감사권한 부여 필요

○ 현행 「공공감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처에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권한을 부여해야 함

□ (주요 이슈 4)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신설 필요

○ 17개 광역 시·도별 사무처 조직 및 의원 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사무처에 의회사무처장(2급)과 담당관(4급)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현재 지방의회는 3급 직제가 부재한 기형적 조직구조 형태임

○ 더 큰 문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사실상 집행부와 인사 교류가 막힘으로 인해) 지방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경우 최대 4급까지 밖에 승진할 수 없어,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의회사무처장(2급) 아래에 3급 직제를 신설하여 사무처장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 강화 및 사무처 직원들의 승진 제한 해소와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요 이슈 5)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필요

○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수는 확대된 반면,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확대되지 않음으로써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큰 지장을 받고 있음

- 예컨대, 경기도의회 의원정수는 10대 의회 142명에서 11대 의회 156명으로 14명(9.8%)이 증가하였으나, 4급 전문위원 수는 13명(5급 11명)으로 종전과 동일함

- 이러한 구조 속에서 1개 상임위원회를 늘리고 싶어도 4급 전문위원 수를 최대 의원정수 131명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해 놓아서 증원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임
- 현행 기준에 따라 5급 정수도 부족한 상황으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전문위원 정수기준(「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19.4.30 개정시행) 등 〉

- **전문위원 정수기준(11개구간)** : 최저의원 20명 이하(4급5, 5급1) ~ 최고의원 131명 이상(4급13, 5급11)
- **의원수** : (광역전체) 민선7기 829명 → 민선8기 877명, 증48(5.7%) / (경기) 민선7기 142명 → 민선8기 156명, 증14(9.8%)
- **4급전문위원** : (광역전체) 민선7기 126명 → 민선8기 128명, 증2(1.5%) / (경기) 민선7기 13명 → 민선8기 13명(無)

○ 따라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 정수구간 확대가 필요함. 현행 상한선인 11개 구간을 13개 구간으로 늘려서 구간별로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정수를 4급과 동일하게 맞추는 조처가 필요함

□ 결론 :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지방의회법」 제정이 답이다!

○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과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현행법 규정이 「지방자치법」의 한 장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임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그 골간을 바로 세워야 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그 정답이자 해법임

- 앞서 지방의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별 법령으로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 결국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3.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분석요약 ≫

◇ 고비용 구조와 위원장으로의 권한 집중을 이유로 지구당이 폐지된 후 20년이 지났음. 최근 지역에서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지구당 부활, 왜 논란이 되는가

○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음

○ 지구당은 입당, 탈당 등 당원관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정당 구성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음

□ 현행 당원협의회의 한계

(1) 지구당 폐지의 배경과 과정

○ 과거 지구당은 중앙당과 함께 법적 정당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지역에서 정당활동의 구심점이었음

○ 평상시에는 지역별 하위조직과 여성위원회나 청년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원 교육, 민원 해결, 여론 수렴 등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되었음

○ 지구당 운영비는 주로 위원장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외에 지역에서의 경조사비와 각종 행사 비용, 조직책 관리 비용 등으로 상당한 경비가 필요했음

○ 고비용 구조와 위원장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지구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지구당이 불법자금 수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2004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하게 되었음

○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당 이하의 정당 조직은 두지 않도록 하였음

(2) 당원협의회 운영과 한계

○ 기존의 지구당이 수행하던 업무는 시·도당으로 이관되었으나, 10명 내외의 사무직원으로 운영되는 시·도당이 지역구 관리나 당원 교육, 여론 수렴 등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원들의 자발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임의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음

○ 현재 주요 정당은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당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원 관리나 교육 등 과거 지구당의 역할 상당 부분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없어서 시·도당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임

○ 현역 의원들은 후원회 사무실을 지역구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데 반해, 원외 위원장은 사무소 설치가 불법이므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됨.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당의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당원협의회 활동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지구당 부활 관련 입법 논의

○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 첫째, 임의조직으로서의 당원협의회를 유지하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정당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방안임

(1)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 금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바, 「정당법」 제37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수 있음

* 제37조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지구당 조직 부활

○ 정당의 구성단위로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되, 회계 보고 규정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

<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 >

①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지구당과 차별성이 없음
② 「정치자금법」 등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로 지구당이 부활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폐단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임
③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구당은 정당조직의 근간으로, 정당정치가 발달한 주요국에서 지역단위에서의 정당조직을 법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지구당 부활 관련 쟁점

(1) 설치 단위 및 정당 구성

○ 지구당을 부활시킬 경우 설치 단위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할 것인지 혹은 자치구·시·군 단위로 할 것인지가 쟁점임

○ **선거구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지구당이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면서 선거운동의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함

○ 반면 과거 지구당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음.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생활권이 다른 지역들이 한 선거구에 속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선거구 단위는 유권자와 정당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음. 또한 지구당이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면 위원장이 권한을 독점하고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지구당을 부활시킬 경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를 존치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임.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구당 부활시 시·도당을 폐지하자는 안과 존치하되 임의조직으로 두는 안, 현행 구성을 유지하고 지구당을 추가로 설치하는 안이 제시되었음. 당원협의회 또한 폐지할 것인지, 혹은 임의기구로 두고 읍·면·동 단위로 유지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임

(2) 고비용 구조 차단과 정치자금 투명화

○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당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후원회 설치를 허용할 경우 기부 및 모금 한도를 정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정책연구소에 30%, 시·도당에 10%, 여성정치발전에 10%, 청년정치발전에 5%를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지구당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도 논의 사항임

○ 지구당에서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회계처리 및 보고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구당 부활의 전망과 과제

○ 과거에 비해 자발적인 당원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불법자금 수요는 줄었다는 평가가 있음.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간 당비 내는 당원의 수가 15.6배 늘어 250만 명을 넘었고, 정당 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졌음. 당원기반이 확충된 만큼 지역 단위에서 숙의와 토론을 위해 지구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임

○ 현재 지구당의 필요성은 주로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당협위원장이 아닌 다른 정치신인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을 낙점하는 구조에서 지구당 부활은 중앙당에 대한 지역의 예속을 심화한다는 비판도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사모펀드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하면서 경영 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공의 재정지원이 승객의 편익이 아닌 사모펀드의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등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익은 사유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은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보완방안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의 추가적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차고지 매각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 성과이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 최근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함에 따라 버스업계의 대형화·투명화·효율화 등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고지 등 인프라 매각 및 과잉 배당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올해 말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사모펀드의 투자금 회수(Exit)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 배경 및 현황

(1) 버스준공영제의 개요 및 현황

○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소유·운행은 각 버스업체가 하되, 요금조정·운행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임

○ 버스준공영제는 서울특별시, 5대 광역시(울산 제외), 제주, 경기 등에서 시행 중임

○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지자체와 업체가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면서 버스 대수나 운행실적 등 운행 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정산하는 '수입금공동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

○ 재정지원 금은 수입 또는 서비스 수준 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인건비·연료비, 정비비·차량보험료 및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하여 지원됨

○ 한편, 2022년·2023년 각각 약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연간손실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의 연간손실지원금 증가율은 서울시는 73.6%에 달하고 대전시는 4.8%에 불과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표 1] 전국 시내버스 준공영제 현황(2024.6월 기준)

구분	지역	시행시기	업체수(개)	노선수(개)	차량수(대)
특·광역시	서울특별시	2004.7.	64	393	7,384
	대전광역시	2005.7.	13	104	1,029
	대구광역시	2006.2.	26	122	1,652
	광주광역시	2006.12.	10	101	1,040
	부산광역시	2007.5.	33	145	2,511
	인천광역시	2009.8.	34	188	1,922
도	제주특별자치도	2017.8.	7	218	733
	경기도	2018.4.	53	172	1,595

※ 자료: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시·군지역은 제외하였음)

[표 2] 버스준공영제 시행지역 연간손실지원금

(단위: 억 원, %)

구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	제주	경기	합계
'20	1,705	1,000	1,819	1,189	1,881	1,906	983	911	11,394
'21	4,561	1,051	1,946	1,221	3,672	2,181	1,046	2,200	17,878
'22	8,114	1,166	2,577	1,393	3,056	2,648	1,188	2,444	22,586
'23	8,915	1,150	2,296	1,424	2,710	2,816	1,154	2,346	22,811
연평균 증감률	73.6	4.8	8.1	6.2	12.9	13.9	5.5	37.1	26.0

※ 주: 연평균 증감률은 주어진 기간('20~'23) 기준임

※ 자료: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2)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 현황

○ 사모펀드는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각종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의미함

○ 최근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표 3] 지역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진입 규모

구분	서울	대전	인천	제주	경기
운용사	차파트너스 등	차파트너스	차파트너스	차파트너스	자비스 엠씨
사모 보유	6개 社 (1,027대)	2개 社 (143대)	10개 社 (653대)	1개 社 (70대)	7개 社 (1,499대)
지역 전체	64개 社 (7,384대)	13개 社 (1,029대)	34개 社 (1,922대)	7개 社 (733대)	74개 社 (10,533대)
사모보유 비중	9.4% (13.9%)	15.4% (13.9%)	29.4% (34.0%)	14.3% (9.5%)	9.5% (14.2%)

※ 자료: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 사모펀드 진입의 기대효과와 우려

(1)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에 따른 기대효과

○ 사모펀드는 대규모 자본 유치 능력을 활용하여 산업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음. 막대한 초기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버스의 품질 개선이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에 있어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데,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시내버스 업체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버스 사업에 투자할 자본력과 노하우가 있어 새로운 활로를 구축하는 데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2) 사모펀드의 버스준공영제 진입에 따른 우려

○ 정부의 버스업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승객(시민)의 편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모펀드의 이익으로만 연결될 우려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후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주주 배당을 한 사례가 문제 된 바 있고, 한 여객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하면서도 매각 직후 회계연도에 698%에 달하는 배당 성향을 보인 바 있음

○ 사모펀드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음. 가령,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만큼 감축되었고, 특히 사모펀드가 인수한 경기도의 7개 버스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기도 하였음

○ 이익 극대화 과정에서 저수익 노선의 운행을 감축·폐지하는 경우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대중교통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

□ 나아갈 방향

(1) 버스준공영제 관련 가이드라인의 보완

○ 2023년 국토교통부는 사모펀드가 차고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

- 개정 내용은 기존 차고지 매각에 따른 공차와 충전거리 증가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의 정산 제외, 차고지 개발 및 매각 시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 차고지 매각 등에 따른 처분이익 발생 시 과도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할관청의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점과의 거리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시간 증가, 노선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 가중, 공영차고지 부족 등에 따른 추가 차고지 건설과 같은 공공 비용의 발생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보완 방안 마련 필요함

(2) 차고지 매각 금지명령 발동 등

○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개발·매각 시 관할관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형태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차고지는 버스운송사업을 구성하는 필수적 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 보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보고·검사 등 점검, 관련 개선명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 취소·정지 등을 하기에 앞서 '개선명령·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성과이윤 지급체계 변경

○ 현재 성과이윤과 기본이윤이 유사한 수준이나, 전체 연간 손실지원금 중 성과이윤의 비중이 2.66%에 불과하여 성과이윤이 적절한 인센티브 및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어려운바, 버스회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이윤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4] 2022년 지자체 별 연간 손실지원금 및 적정이윤

(단위: 억 원, %)

구분	적정이윤			손실지원금
	기본이윤	성과이윤	총계	
서울	183	274(3.38%)	457	8,114
대전	31	35(3.00%)	66	1,166
대구	59	45(1.75%)	104	2,577
광주	35	34(2.44%)	69	1,393
부산	59	59(1.93%)	118	3,056
인천	57	57(2.15%)	114	2,648
합계	424	504(2.66%)	928	18,954

※자료: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5. 배터리 폭발사고 증가문제, 근원적 처방을 위한 리스크 분석 기반 안전규제 체계 조속히 마련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연구요약 》

◇ 노후 전기차 증가와 배터리 폭발사고 증가로 인한 국민 안전문제 심각
◇ 정부, 배터리 분야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분석에 기반한 탄력적 규제를 적용하는 시스템의 조속한 정비 필요

□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관련 안전문제**가 최근 중요한 이슈로 대두

○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비율**은 **감소**, **전기차**의 **화재 발생** 건수는 뚜렷이 **증가**

- 내연기관 차량의 1만대 당 화재 발생 건수는 '17년 2.2건에서 '23년 1.9건으로 감소, 전기차의 경우는 '17년 0건에서 '23년 1.3건으로 증가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8년부터 발생

< 내연기관과 전기차 화재 건수 비교 >

구 분	차량등록 수(비율)			화재건수(1만대 당 건수)		
	계	내연기관	전기차	계	내연기관 화재	전기차 화재
2017년	22,528,295	22,503187(99.9)	25,108 (0.1)▲	4,971(2.2)	4,971(2.2)	-
2018년	23,202,555	23,146,799(99.8)	55,756 (0.2)▲	5,067(2.2)	5,065(2.2)	2 (0.4)▲
2019년	23,677,366	23,587,448(99.6)	89,9189(0.4)▲	4,710(2)	4,707(2)	3 (0.3)▲
2020년	24,365,979	24,231,017(99.4)	134,962(0.6)▲	4,558(1.9)	4,547(1.9)	11(0.8)▲
2021년	24,911,101	24,679,658(99.1)	231,443(0.9)▲	4,530(1.8)	4,506(1.8)	24 (1)▲
2022년	25,503,078	25,113,223(98.5)	389,855(1.5)▲	4,669(1.8)	4,625(1.8)	44(1.1)▲
2023년	25,949,201	25,405,301(97.9)	543,900(2.1)▲	4,796(2.1)	4,724(1.9)	72(1.3)▲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자료 2017-202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 데이터 참고

□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비롯**되며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됨

○ 단시간 내 대형 화재·폭발 발생,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안전문제 이슈화

*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4가지 원인 : 배터리결함, BMS결함, 배선 혹은 커넥터 결함, 급속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노화 (이호근, 2023)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대상과 비율이 확대되었지만,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문제**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전기차, ESS (Energy Storage System), PM (Personal Mobility), 스마트폰 등 모두 같은 이차전지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 시 생성되는 유독성·폭발성 물질로 인해 특수재난으로 분류됨 (HazMat) (김흥환, 2013)

*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ESS, PM, 레저용 등으로 재활용 가능

○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에 대한 확실한 화재·폭발 **원인 불분명**

*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폭주를 일으키는 5가지 원인** : 양극에 의한 전해질의 화학적 환원, 전해질의 열분해, 음극에 의한 전해질의 화학적 산화, 음극과 양극에 의한 열분해, 전하효과에 의한 내부 단락(김흥환, 2023)

-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위험요인은 열폭주, 좌초된 에너지, 유독성 및 가연성 기체이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화재·폭발에 대한 원인규명 부족
- 화재원인으로 지목되는 각종 결함이 제조, 이송 및 탈부착, 주행 및 충전, 충돌 등 어떤 과정에서 발생·확대되고 화재·폭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불충분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원인이 배터리(차량, 선박부품)인 화재 건수는 '17년 168건에서 '23년 199건으로 18.5% 증가하였고, 재산피해 규모도 '17년 건당 5,959천원 대비 '23년은 건당 약 43,807천원으로 6.4배 증가

□ 국내 배터리 관련 **안전성 검증제도**는 **도입**, 과학적 근거기반 **안전규제**는 **미흡**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으로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제도 도입 ('23.10.)

-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최초**로 사용 후 배터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전성 검증체계**와 **사후관리제도 도입**
-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검사 근거 신설 ('22년 개정 완료, '23년 10월 시행)

○ **ESS 폭발사고 이후** 과학적 원인을 밝히지 못함에도 불구 **안전규제만 강화**

- ESS 화재 이후 정부는 안전기준과 관리제도를 개선했지만, 설치기준의 강화(옥내 설치요건 및 전기적 보호장치 의무화)로 인해 이차전지산업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관계부처 협동, 2019)

- 현재 규제는 주로 폐배터리에 적용,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안전관리보다**는 **폐기단계**의 **안전만을 강조**하는 **단편적**인 **해결책**

* 안전 확보 대책방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강원도 삼척시 소방방재산업특구 내 '대용량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약 4,700평) 구축

<< 해외사례 >>

□ 해외 주요국은 실증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성 지원 강화 정책 추진**

○ 영국은 **안전성 관련 체계**를 **통합 일원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배터리 실증사업**을 통해 **데이터 축적**

* 영국은 독립적 기구인 보건안전청 HSE(Health and Safe Executive)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행정을 위해 각 부처 보건·안전 분야를 통합하여 안전성 관련 체계 일원화

- 영국 HSE는 전용 배터리 안전실 외에 HSE 과학연구센터 부지(67만평 이상)에서 대규모 화재 및 폭발물 실험을 정기적으로 수행
- 보건안전청은 연구소를 통해 위험성 평가 관련 실험을 수행하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규제 감독, 인증제도 실행,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안전성 개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 각국은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사업 중심 전주기 안전성 지원 체계 강화**

- [EU] 새로운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2023/1542)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 성능, 배터리 여권, 배터리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 요구사항, 안전성 및 폐기물 관리를 광범위하게 규제
- [미국] 미국 에너지부는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법률, 정책, 인센티브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급망 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
-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정 제품과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실증 테스트 및 평가 지원

《 시사점 》

□ **배터리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통한 **탄력적 규제 적용 시스템 개선** 필요

○ 전주기 위험성 평가 기반 실증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전기준 정립

- 시험분석 및 실사용 환경 데이터로 위험발생 확률과 피해 규모 예측으로 상황에 맞는 규제 강도와 방식 적용 필요

○ 전기차, ESS, PM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배터리 폭발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리스크 관리 기반의 접근 필요

- ESS는 폭발위험이 크므로 강화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며, PM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중한 경계 관점*의 접근 필요

* 신중한 경계 접근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때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 **안전규제 관리**를 **통합 일원화**하는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범부처 수준의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관리주체 일원화

- 주요국의 배터리 공급망 관리를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
- [대안 1] 주요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안전성 관련 규제감독, 인증, 교육, 기업지원, 과학적 기반 실증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기관 신설
- [대안 2] 기존의 체계 내에서 안전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고려

○ 리스크 규제체계 기반 안전성 관리 총괄규범을 제정,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기존 법률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분리하여 각 개별 법률*을 통합 할 수 있는 '안전성관리 기본법' 추진 필요

* 현행 우리나라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규범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음으로 총괄적 규범으로서 한계(최해옥 외, 2023)

- 안전성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신속하고 일관된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필요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감정산 및 교부방식의 문제점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교부금이다.

○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에 법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액인 68조 7,057억 2,400만원에서 7조 1,688억 5,2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61조 6,947억 5,9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통교부세에서만 감액분만큼을 미교부, 불용 처리하여 보통교부세는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66조 6,445억 5,200만원 중 59조 4,757억원이 집행되었고, 특별교부세(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재난안전관리)는 당초 예산현액 2조 611억 7,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3회계연도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보통교부세	66,644,552	66,644,552	59,475,700	-	7,168,852	59,843,917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24,469	824,469	824,469	-	-	740,337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06,117	206,117	206,117	-	-	185,08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30,586	1,030,586	1,030,586	-	-	925,421
합 계	68,705,724	68,705,724	61,536,872	-	7,168,852	61,694,759

자료: 행정안전부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으로 법정교부금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모두 2023년 세수결손을 반영한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감정산 방식은 소관부처별로 상이하다.

○ 행정안전부는 당초 총 10.2조원의 지방교부세를 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연말 추가 교부로 총 7.2조원을 불용하면서 보통교부세에서만 감정산을 하였다. 반면 교육부는 감정산소요 10.4조원을 전액 불용하였으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법정률을 고려하여 불용하되 특별교부금 내에서는 종류별로 불용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재원규정	본예산	불용액	교부액	비율
지방교부세 불용액(7조 1,689억원): 내국세 수입 감소액의 19.24% 중 일부(약 70%)		687,057	71,689	615,369	100.0%
보통교부세	내국세 × 19.24% × 97%	666,445	71,689	594,757	96.6%
특별교부세	내국세 × 19.24% × 3%	20,612	0	20,612	3.3%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총액의 40%	8,245	0	8,245	(40%)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총액의 10%	2,061	0	2,061	(1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액의 50%	10,306	0	10,306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10조 3,969억원): 내국세 수입 감소액의 20.79% 전액		757,606	103,969	653,637	100.0%
보통교부금	내국세 × 20.79% × 97% + 교육세 일부	735,334	101,169	634,165	97.0%[1]
특별교부금	내국세 × 20.79% × 3%	22,272	2,800	19,427	3.0%[1]
국가시책	특별교부세 총액의 60%	13,363	0	13,363	(69%)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총액의 30%	6,682	2,100	4,582	(2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액의 10%	2,227	700	1,527	(8%)

주: 1) 교육세로 인해 정확히 97%, 3%는 아니며, 반올림한 결과임
자료: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나. 분석의견

○ 지방교부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2013회계연도 세수 결손에 따른 불용사례를 근거로 세입 경정 없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예산을 미교부하는 것은 해당 불용에 대하여 국회가 시정요구를 했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2023년 9월 당해연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23.9.18. 정부합동) 약 54.8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세입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세입경정을 통해 이를 차(차)년도에 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23년도는 세입경정 없이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 감정산이 이루어졌다. 즉,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기 확정된 보통교부세 배정액에 미배정율(10.8%)만큼 일괄 감조정하여 연말까지 해당액만 교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및 결산 내역]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예산(A)	세입 재추계 결과		결산	
		예상액(B)	증감액(B-A)	예상액(C)	증감액(C-A)
내국세	358.0	303.1	△54.8	304.0	△54.0
교부세 법정교부금	68.7	58.1	△10.6	58.5	△10.2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2013년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이월·불용처리한 사례가 있고, 예산 집행 시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정당국이 국세 징수실적 등 자금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했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불용 조치에 대해 국회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시정조치 완료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실제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전액 교부하였다.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26)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	• [지적사항] 안전행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2013년 지방교부금 1조 130억 3,200만원을 미배정하고 이를 이월·불용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국고지원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함 • [시정요구사항]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2013년도와 같이 지방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것	시정	• (조치계획)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2013년도는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 및 불용 처리됨 - 향후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15.4.30 조치완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 더불어 「국가재정법」 제43조에서 분기별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상은 정부재정사업이며, 지방교부세와 같이 법정의무지출도 해당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 조절을 세입 경정을 전제로 하고 차(차)년도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해 재정당국의 배정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중앙정부의 계획되지 않은 미교부 불용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추진 중이던 자체 사업을 중지, 연기하고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전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채 발행이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도 중 계획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미교부·불용 처리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운용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 결정에 따라 당해연도 교부세 미교부 규모를 결정하고, 교부세 종류별 법정률도 준수하지 않는 교부방식은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내국세 수입액을 반영하여 미교부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①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공시한 미교부(불용) 예정액 10.2조원 중 일부만 당해연도에 반영함으로써 12월에 추가금을 교부하고 ② 보통교부세에서만 7.2조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는 당초 예산대로 전액 교부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내국세 수입액을 반영하여 약 10.2조원을 미교부할 방침이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7.2조원만 불용하고 약 3조원은 2025년 예산 편성 시 감정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교부 결정을 공표하였을 때에는 당초 고시된 월별교부계획액에서 11월분 일부와 12월분을 미교부한다고 발표했지만 12월 10일에 3조원을 추가 교부하였다.

○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은 법정교부금 재원의 97%는 보통교부세로, 3%는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자체 결정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본예산과 동일하게 교부하고 보통교부세 예산만 7.2조원 불용 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조정한 총액을 법정률 비율에 따라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보통교부세의 미교부액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비율 역시 근거 법령에서 지정한 것과는 다르게 교부되었다.

[2023년 지방교부세 재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재원규정	목적 및 산정방식	본예산	불용액
보통교부세	내국세 × 19.24% ×97%	• 지자체 기본행정수행경비 보장, 단체별 재정력 격차 해소 • 전국 지자체 대상[1] 기초재정 수입액과 소요액 차이로 산정	666,445	71,689
특별교부세	내국세 × 19.24% × 3%	• 행안부가 총 재원 내에서 교부 대상 및 교부액 결정	20,612	0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총액의 40%	• 지방현안수요 충당	8,245	0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총액의 10%	• 국가적 장려사업, 재정운용실적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등	2,061	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액의 50%	• 재난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 재정수요 충당	10,306	0

주: 1. 산정기준이 된 내국세 결산액은 303조 9,918억원(기준 내국세액 306조 595억원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인 2조 677억원 제외)
1) 해당연도 교부세 불교부대상 자치단체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원별 법정률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 과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재정당국이 필요시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교부세 종류별 비중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당해연도 발생할 법정률 미준수 문제는 2025년도 예산안에 추가 감정산분을 반영하면서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편성할 예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또한 특별교부세는 당시 교부대상인 자치단체별 배정액이 미확정이었고,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의 경우 연초 사업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었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재원이어서 미조정했다고 부연하였다.

○ 그러나 첫째, 정부의 의무지출금으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재원이자 지방통합재정수입의 22% 이상을 차지하는(2023년 본예산 기준) 교부세를 운영하면서 명확한 지침이나 근거 없이 교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근거 법령에서 교부세 종류별 비율과 감·가정산 방식을 명문화한 것은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당해연도 교부액은 당시 정부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차)차년도에 정산과정에서 재조정하여 법정률을 맞추는 방식은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둘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행정수행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재원인 보통교부세에만 미교부 방침을 적용하고, 행정안전부가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여 일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는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한 것은 면밀한 검토 하에 이루어진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인 자치단체별 배정액이 미확정이었다면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자치단체별 교부액이 고시된 보통교부세 대비 조정에 따른 문제가 적을 수 있다. 또한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가 이미 집행 중으로 불용 처리가 어려웠다고 하나, 전국 지자체들이 보통교부세 재원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었음에도 미교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발생가능한 폭설 등 재난 상황에는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지방교부세 재원에 대해 엄밀한 기준 없이 정부 결정에 따라 교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제고 및 관련인력 관리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 등에 따라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이다.

○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등급 및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활동지원등급은 1~15구간으로 분류하며 최소 약 60시간(971천원) ~ 최대 약 480시간(7,754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급을 위해 기본급여, 보전급여,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등으로 **총 1조 9,46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 밖에 가산수당 219억 2,500만원, 위탁사업비 232억 9,600만원, 운영비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활동지원급여 예산 편성 내역]

산출내역
○ 활동지원급여: 1,946,153백만원 - (기본급여) 115,000명 × 15,570원(단가) × 127시간 ×12개월 × 67%= 1,828,295백만원 - (보전급여) 19,613명 × 15,570원(단가) × 21.04시간 ×12개월 × 67%= 51,658백만원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608명 × 15,570원(단가) × 154시간 × 12개월 × 67% = 11,721백만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2,720명 × 15,570원(단가) × 160시간 × 12개월 × 67% = 54,48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예산현액 1조 9,918억 2,800만원 중 **1조 9,918억**

[2023회계연도 활동지원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당초	수정							
장애인 활동지원	1,991,879	1,991,879	-	51	1,991,828	1,991,810	-	18	2,284,604
활동지원 급여	1,946,153	1,946,153	-	△25,153	1,921,000	1,921,000	-	-	2,213,224

자료: 보건복지부

1,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115,000명), 보전급여(19,613명),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608명),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2,720명)으로 나눠지며, 급여별 단가 및 활동지원 제공 시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나. 분석의견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활동지원급여 이용률'은 연례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2020년 83.9%, 2021년 82.6%, 2022년~2023년 81.7%로 꾸준히 하락**하였고 2024년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81.8%로 설정하였다. **2020~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률 실적은 2020년 81.6% 대비 2023년 80.4%로 감소하는 추세**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률의 감소와 관련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의 미이용 사유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활동지원 급여 이용률 (%)	목표	83.9	82.6	81.7	81.7	81.8	최근 3년간 평균 급여 이용률 설정	활동지원급여 이용률 =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사회보장 정보원
	실적	81.6	81.3	80.3	80.4	-			
	달성도	97.3	98.4	98.4	98.4	-			

자료: 보건복지부

○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사유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미연계(38.0%), 가족돌봄(26.8%)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에 사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도시에 비해 전체인구 부족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애특성 및 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장애인 돌봄이 가족에게 가중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미인지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등록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1,234명에서 2024년 119,014명으로 3.8배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사(활동인원)

비율은 2011년 0.5명에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0.7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활동지원사가 1:1 매칭이 되지않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및 제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활동지원 수급자수	장애인활동지원사 (등록인원)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인원)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사(활동지원)
2011	46,502	31,234	23,653	0.5
2012	50,520	42,467	28,003	0.6
2013	60,435	67,823	40,448	0.7
2014	64,906	56,531	46,812	0.7
2015	72,212	61,366	52,761	0.7
2016	79,926	64,145	58,102	0.7
2017	86,926	68,167	62,629	0.7
2018	94,496	72,981	68,673	0.7
2019	105,569	82,448	78,044	0.7
2020	115,017	88,551	84,854	0.7
2021	127,363	98,873	95,046	0.7
2022	139,509	109,243	103,378	0.7
2023	151,259	118,180	112,570	0.7
2024	152,304	119,014	112,616	0.7

주: 2024년 1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종합하면,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부족하고 돌봄의 부담이 그 가족에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적지원서비스로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원활한 추진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력이나 지역별 인력 수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여성 및 중고령층이며, 자격 취득이 용이하므로 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할 필요가 있다.

○ 2023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활동지원사(112,750명)의 79.2%는 50~70대**로 중·고령층 인력이 대부분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7.6%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장애인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 1인당 장애인활동지원사
계	152,304	1,087	112,616	0.7
서울	26,679	150	20,963	0.8
부산	10,249	65	8,475	0.8
대구	7,114	44	5,452	0.8
인천	8,234	46	6,405	0.8
광주	6,003	34	4,321	0.7
대전	5,474	25	5,204	1.0
울산	2,396	15	1,742	0.7
세종	845	6	645	0.8
경기	35,313	225	24,877	0.7
강원	4,085	46	2,458	0.6
충북	4,578	40	3,407	0.7
충남	7,152	59	4,668	0.7
전북	6,549	65	4,401	0.7
전남	7,223	72	5,213	0.7
경북	7,405	77	4,907	0.7
경남	10,729	108	8,001	0.7
제주	2,276	10	1,477	0.6

주: 2024년 1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대다수가 중·고령층 및 여성이며 처우도 열악한 바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 적절한 인력관리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확보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활동지원인력 고령화를 고려하여 건강지원 등 인력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24년 6월~8월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는 미이용 사유를 조사할 계획**인바, 향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사업에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 (2023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연관 산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전북권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139억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57억 800만원을 이월, 81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3회계연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새만금 신공항 건설	13,500	420	-	13,920	19	5,708	8,193	32,651

자료: 국토교통부

나. 분석의견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0.6.~2021.12.)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2020.9.~2022.2.)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2022.5.)를 거쳐 2022년 6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2022.9.)를 거쳐 턴키공사 입찰공고(2023.3.)를 통해 **2023년 4월에 기본설계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

를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낙찰자 선정(2024년 3월~7월)을 거친 후 **2024년 7월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그러나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정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착수**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용역 기간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추진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적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 사업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 하지 않았다. 2023년 예산의 경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기본조사 설계비 중 **57억 800만원을 이월하고, 실시설계비 75억원은 전액 불용**하게 된 것이다.

○ 그런데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 결과, 동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새만금 SOC 사업 행정절차 재개 및 수시배정예산 해제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24년도에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 327억원을 절차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공사입찰(턴키) 절차를 재개('24.4)하였으며, 기본설계 심의(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가 진행 중**이다.

○ 다만,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단체가 취소소송을 제기('22.9.)하는 등 동 사업의 **환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2022년 2월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도 사업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법정보호종 및 서식지 보전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부지 인근의 환경생태(조류, 흰발농게 등)에 대한 정밀조사 후 개체군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다수의 SOC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1년여 지연된 만큼 지난해 중단되었던 기본설계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고 후속 절차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이스포츠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 2024.7.) -

가. 현 황

○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은 게임산업 육성사업내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이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의 구축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경기장 구축에 30~40억원의 국비를 지원(정액지원)하고, 구축된 경기장에 대한 운영비를 매년 2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지역에 이스포츠경기장이 조성되었고, 충남 지역에는 이스포츠경기장이 구축 중인 상황이다.

[지역 이스포츠경기장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합계
대전	2019.1.1.~2021.09.15	3,000	4,000	7,000
광주	2019.1.1.~2020.12.20	3,000	3,000	6,000
부산	2019.1.1.~2020.11.18	3,000	3,000	6,000
경남	2021.7.19.~2024.5.17	3,000	5,000	8,000
충남	2023.8.1.~2025.11.30	4,000	16,070	20,0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 첫째, 현재 조성된 이스포츠경기장의 가동률이 40~50%대로 저조하고, 활용 용도 또한 단순 투어 프로그램 목적의 활용이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역 행사와의 연계, 자체 기획 행사 추진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경기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라 현재 조성된 대전·광주·부산 이스포츠경기장의 최근 3년간 가동률 현황을 보면 대전 42.8%, 광주 51.3%, 부산 46.4%로 저조한 상황이다.

○ 더욱이 항목별(대회·행사·교육·투어) 가동일 현황을 보면 이스포츠경기장의 구축 목적인 대회나 행사 개최일보다 단순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가동일이 더욱 많은 상황인데, 대전 경기장의 경우 3년간 대회용도로 경기장을 이용한 일은 96일이었으나 투어용도로 경기장을 이용한 일은 107일이었고, 광주 경기장의 경우에는 대회용도 68일, 투어용도 120일, 부산 경기장 또한 대회용도 108일, 투어용도 110일로 3개의 경기장 모두 투어용도로 경기장을 이용한 일수가 많은 상황이다.

[대전·광주·부산 이스포츠 경기장 가동률 현황]

(단위: 일, %)

지역	개소일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총합
대전	'21.9.15.	**대회**	22	39	35	**96**
		행사	7	30	33	70
		교육	16	60	28	104
		투어	12	0	95	**107**
		가동일	57	129	191	377
		중복일	11	20	63	94
		연간 가동 가능일	87	261	313	661
		가동률	52.9	41.8	40.9	**42.8**
광주	'20.12.20	**대회**	20	27	21	**68**
		행사	14	19	59	92
		교육	2	14	2	18
		투어	20	41	59	**120**
		가동일	56	101	141	298
		중복일	11	10	-	21
		연간 가동 가능일	180	180	180	540
		가동률	25.0	50.6	78.3	**51.3**
부산	'20.11.18	**대회**	23	45	40	**108**
		행사	30	46	30	106
		교육	52	13	72	137
		투어	25	20	65	**110**
		가동일	130	124	207	461
		중복일	20	28	32	80
		연간 가동 가능일	261	261	300	822
		가동률	42.1	36.8	58.3	**46.4**

주: 1) 가동률의 경우 가동일에서 중복일을 제외한 수치로 적용
2) 광주 경기장의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건물을 제공받아 조성되어 연간 180일은 조선대학교가 경기장을 사용하기로 협약됨에 따라 연간 가동 가능일이 낮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에 경남 경기장이 조성되었고, 2025년에 충남 경기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동 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이 추가로 조성되는 경우 기존 이스포츠경기장의 가동률은 더욱 낮아질 우려가 있을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스포츠경기장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역 행사와의 연계, 자체 기획 행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이스포츠 대회의 동 경기장 개최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의 가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이스포츠경기장 조성 시 경기장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기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이스포츠대회 현황]

(단위: 백만원)

주관기관	대회명	대회 절차	개최일	개최장소	지원금액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전국 시·도 교육청 지역 예선	6.1~7.31	각 시도교육청 운영	225
		페스티벌 개최	9.5~9.6	경주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대회 개최	11.24~11.26	광주 이스포츠 경기장	560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예선전	9.3/9.14~15	온라인	300
		페스티벌 개최	11.11~12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한국e스포츠협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지역 대표 선발전	7.1~30.	16개 지자체 개별 장소	715
		전국 결선	8.19.~20.	군산	
		월별 리그	9.10~24./ 10.3~15.	이스포츠 시설 (PC방)	
		리그 결선	12.9.~10.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	
	2023 동호인 대회	전반기 시즌대회	4~6월	이스포츠 시설 (PC방)	550
		전반기 플레이오프대회	7.15.~16.	서울	
		후반기 시즌대회	8.12./8.26. 9.10./10.14.	이스포츠 시설 (PC방)	
		후반기 플레이오프 대회	11.26.	이스포츠 시설 (PC방)	
	2023 이스포츠 대학리그	지역대표 선발전	8~9월	이스포츠 시설 및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300
		전국 본선	9.23./10.7./ 10.28./11.11.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전국 결선	12.2.~3.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	
	2023 한중일 대회	대회 개최	12.15.~17.	여수	600
	아시안게임 지역대회 유치	대회 개최	8.2.~6.	서울(잠실)	9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둘째,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장 운영비에 대한 연차별 지원 및 종료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운영비 지원예산 부담이 점차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종료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지역 경기장마다 매년 2억원씩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

[지역 이스포츠경기장 운영 예산 분담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2021		2022		2023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대전	200	800	200	1,200	200	1,400
광주	200	1,000	200	1,000	200	1,000
부산	200	800	200	900	200	9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에도 대전·광주·부산 경기장에 각각 2억원씩을 지급하였고, 5월 17일에 조성된 경남 경기장에도 2억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2025년에 조성될 충남 경기장에도 매년 2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 2020년에 2개(대전·광주)의 경기장이 조성되었고 2021년 1개(부산), 2024년 1개(경남), 2025년에 1개(충남) 경기장이 조성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도 동 사업에 따라 경기장이 지속적으로 추가 조성되는 경우 운영비 지원예산 부담은 점차 증가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하여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에 대한 연차별 운영비 지원 및 종료에 대한 기준 등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언제 종료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운영비 지원예산 부담이 점차 증가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종료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로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사업 내 지역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의 경우 지자체 소유인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연차별 운영비 지원 및 종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공연연습장 운영비 지원 기준]

구분	사업연차	운영비 지원액(비율)
안정기	개관 이후 ~ 3년차	130백만원(100%)
준비기	4년차	65백만원(50%)
독립기	5년차	26백만원(20%)
지자체 이관	6년차 이후	0원(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